

제29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제4차 회장단 회의 자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제29대 국교련 제4차 회장단 회의

일 시

2026년 7월 24일(금) 15시 ~ 25(토) 12시

장 소

국립경국대학교 대학별관 401호 회의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Associations

제29대

☎ 5489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진수당 364호 국교련

☎ 063-270-2011

✉ newknupa29@naver.com

제29대 국교련 제4차 회장단 회의 일정

제4차 회장단 회의 개요

- 일 시 : 2026년 7월 24일(금) ~ 25(토)
- 장 소 : 국립경국대학교 대학별관 401호 회의실
- 참석대상 : 국교련 회원교 회(의)장단 및 임원, 국교련 정책위원과 자문위원 등
- 회의 일정

시 간		내 용	
1일차 (7.24.금)	14:30~15:00	□ 등 록: 국립경국대학교 대학별관 401호 회의실	총장실 티타임
	15:00~15:10	□ 국립경국대 총장 환영사 - 국립경국대 총장 환영사 및 기념사진 촬영	
	15:10~17:30	□ 제4차 회장단 회의 개회 선언 - 성원 보고 - 개회 선언	
		□ 활동 보고 - 상임회장 인사말 - 회순 통과, 전차 회의록 확인 및 채택 - 활동 보고	
		□ 안전 토의 1. 국립대학법 제정(안) 준비 2. 교연비 헌법 소원 준비 3. 교권 준칙 제정 준비 4. 제28대 국교련 감사보고서 승인 5. 기타	
		□ 폐회 선언 - 폐회 선언 및 호텔-만찬 장소 이동	버스로 숙소 이동
	18:30~	□ 만 찬 - 청록한정식 (경북 안동시 운동장길 197)	버스로 만찬 장소 이동
		□ 숙 박 - 안동그랜드호텔 및 리첼호텔 (경북 안동시 관광단지 346-84, 346-69)	
2일차 (7.25.토)	10:00~12:00	□ 도산서원, 이육사생가, 월영교 탐방	버스로 이동

차 례

I. 활동 보고	1
1. 제29대 국교련 제3차 회장단 회의 회의록	2
2. 국교련 활동	8
3. 발신 및 수신 공문	25
II. 안건 토의	39
1. 국립대학법 제정(안) 준비	40
2. 교연비 헌법소원 준비	54
3. 교권 준칙 제정 준비	55
4. 제28대 국교련 감사보고서 승인	59
5. 기타	68
III. 첨부 자료	69
1. 국교련 정관	70
2. 제29대 국교련 임원 명단 및 회의 일정	74
3. 제29대 국교련 회원교 연락처	76
4. 임시총회, 만찬 및 숙박 장소 안내	80

I. 활동 보고

제29대 국교련 활동 사항 보고

1 제29대 국교련 제3차 회장단 회의 회의록

- 일 시 : 2026년6월 19일(금) ~ 20(토)
- 장 소: 국립대학교 정보융합관 203호 중회의실
- 참 석 자: 총 39개교 중 참석 19개 회원교, 위임 10개교(배석 13명)
- 안건 토의 및 의결 사항

1. 활동보고

가. 제2차 교연비 수당화 TF 회의

- 국교조에서 교육부장관을 만나서 교연비 수당화 합의를 재확인했고, 국교조, 교육부, 인사혁신처, 기재부 4주체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음. 4주체 협의체가 구성되면 국교조와 함께 국교련도 동참하면 될 것임
- 국교조가 교육부를 통하여 교수수당 요구를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접수하라고 요청했음 - 이번 교수수당 지급 요구는 세 번째로 만약 인사혁신처가 거부한다면 앞으로 3년간 교수수당지급을 요구할 수 없음.
- 국교련, 거국련, 국중련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추가 성명서 발표는 보류함
- 홍창남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고등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덕현 교수, 청와대 교육비서관 김용련 교수(외대 교육학과) 면담을 추진함

나.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

- 국립경국대의 경우 공공부총장은 외부인사로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에 공공부총장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는 단서를 넣고자 하며
- 지방대학육성법에 따라 규제 특례가 가능하여 법적으로 문제없이 경국대 총장이 공공부총장을 외부인을 임명할 수 있고 순천대는 이미 임용된 사례가 있어 교육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해도 경국대 편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경국대 교수들과 구성원의 입장을 파악한 후 대응하기 위해 3차 회장단 회의에서 경국대 입장을 듣기로 함
- 경국대 문제가 국교련 회원교에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론전을 펼칠 필요가 있고 경상북도의 고위공무원이 낙하산으로 경국대 부총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방지해야 함
- 국립창원대를 과기대로 만들기 위해 창원대 총장과 당선된 경남도지사가 안을

내고 진행하고 있으며 총장은 통합 창원대 이후 교수회장처럼 선거를 하지 않고 임기를 4년으로 마음대로 정했음

- 총장의 발전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얘기할 필요 있어 제3차 회장단 회의 때 창원대 상황을 설명듣고 추가 논의하기로 함
- 국립군산대에서 학생이 수업 중 쉬는 시간에 교수 연구실로 따라가서 소주병으로 교수의 뒤통수를 가격하여 피해 교수는 입원한 상태이며 앞으로 강단에 설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교수의 강의실에서 안전 문제가 심각히 대두됨
- 군산대 교수회장이 군산대 사태의 실체를 파악하여 국교련과 공유하고, 교육부에 교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 2026년도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학생회의 성명서 발표가 있으니, 교수단체에서도 성명서 발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공동회장단에서 동의하는 회장이 없어서 제안은 부결됨.

2. 안전 토의

가. 제28대 국교련 감사는 제28대 국교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24일 (개최지 국립경국대) 제4차 회장단회의 때 감사보고서를 제출함

나. 국립경국대 사태에 대한 대책-외부인사를 대학 주요 보직자 및 특임 교수 등으로 임명되는 문제

- 1) 학내에서는 임명 심사 조건 및 절차를 강화하고 학칙에 조례 적용 기간 적용을 요구함
- 2)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외부 기관이 재정지원을 빌미로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함
- 3) 국교련에서 경상북도에 국립경국대에 대한 압력행사에 대하여 항의 공문을 발송함

다. 국립창원대 사태에 대한 대책

- 1) 국교련에서 연대 성명서를 발송함
- 2) 창원대 교수회에서 진행하는 총장 불신임 투표 결과가 나오면, 교육부에 공문으로 처리를 요구함

라. 군산대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건에 대한 대책

TF를 구성하여 교권 존중 준칙을 만들어서 각 대학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학생들에게 교육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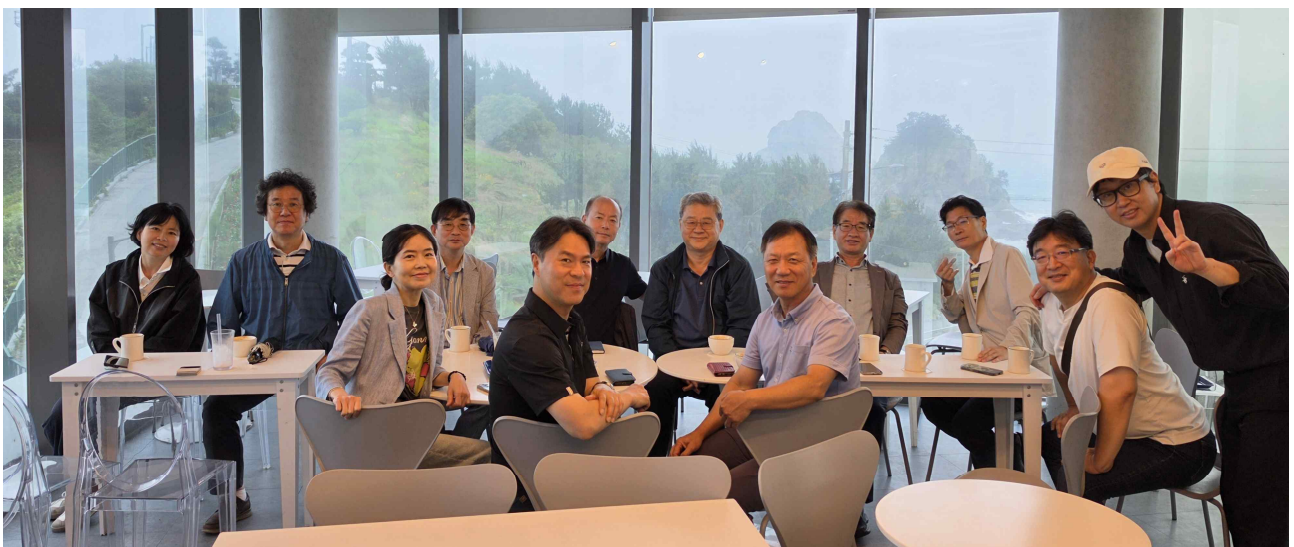
마. 교연비 문제

헌법 소원 TF를 구성하여 대처함

바. 국립대학법 제정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립대학법안을 다듬은 후 4차 회장단 회의 때 논의함

<제29대 국교련 제3차 회장단 회의 사진>



<제29대 국교련 3차 회장단 회의 참석자 명단>

참석 19개교, 위임 10개교, 배석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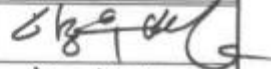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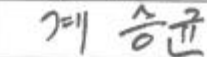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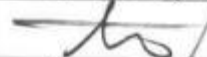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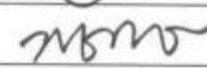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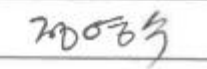
제29대 국교련 제3차 회장단 회의 참석 서명부

2026. 6. 19. 14:30~

연번	대 학 명	직 책	성 명	서 명
1	경북대학교	의장	이경은	이경은
2	경상국립대학교	회장	박상식	박상식
3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회장	한갑수	한갑수
4	국립경국대학교	회장	임채창	임채창
5	국립군산대학교	의장	조혜영	조혜영
6	국립금오공과대학교	회장	장진호	장진호
7	국립목포대학교	의장	강일국	강일국
8	국립부경대학교	회장	류지열	류지열
9	국립순천대학교	의장	손영진	손영진
10	국립창원대학교	의장	이장희	이장희
11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회장	박찬근	
12	국립한밭대학교	회장	이원일	이원일
13	부산대학교	회장	이용재	이용재
14	서울대학교	회장	임정묵	임정묵
15	서울시립대학교	회장	김선형	김선형
16	전북대학교	회장	한상욱	한상욱
17	전주교육대학교	회장	송지환	
18	제주대학교	회장	정수연	
19	진주교육대학교	회장	한병래	한병래
20	충남대학교	회장	정세은	정세은
21	충북대학교	회장	최종국	최종국
22	한경국립대학교	회장	이을규	이을규
23	국교련	사무총장	정석호	정석호
24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학사이사	권경선	
25	부산대학교	기획홍보위원장	권강	권강

제29대 국교련 제3차 회장단 회의 참석 서명부

2026. 6. 19. 14:30~

연번	대 학 명	직 책	성 명	서 명
26	국립군산대학교	사무처장	양우영	
27	국립경국대학교	사무국장	한창완	
28	부산대학교	수석부회장	계승균	
29	국립목포대학교	부의장	김현중	
30	국립창원대학교	부의장	박홍규	
31	국립창원대학교	사무국장	이재민	
32	제주대학교	부회장	정유남	
33	한경국립대학교	사무국장	김성룡	
34	부경대학교	기획이사	백승홍	
35	호남대학교	부의장	신승규	
36	부경대학교	재무이사	강정미	
37	교원대학교	교수처	조영숙	
38				
39				
40				

위 임 장

제29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제3차 회장단 회의

- 일 시 : 2026년 6월 19일(금) 15:00
- 장 소 :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관 중회의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의 제3차 회장단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나 회의 개최 성원(成員)을 위해 상임회장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소속 국립부경대학교 직위 교수회장 성명 박찬균 (서명 또는 인)

TEL: (063)270-2011

E-MAIL: newknupa29@naver.com

위 임 장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제3차 회장단 회의

- 일 시 : 2026년 6월 19일(금) 15:00
- 장 소 :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관 중회의실

연합회의 제3차 회장단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나 회의 개최 성원(成員)을 위해 상임회장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6월 12일

소속 교수회장 성명 남중웅 (서명 또는 인)

E-MAIL: newknupa29@naver.com

위 임 장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3차 회장단 회의

- 일 시 : 2026년 6월 19일(금) 15:00
- 장 소 :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관 중회의실

연합회의 제3차 회장단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나 회의 개최 성원(成員)을 위해 상임회장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6월 18일

소속 교수회장 성명 박찬균 (서명 또는 인)

E-MAIL: newknupa29@naver.com

제3차 회장단 회의

- 일 시 : 2026년 6월 19일(금) 15:00
- 장 소 :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관 중회의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의 제3차 회장단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나 회의 개최 성원(成員)을 위해 상임회장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6월 10일

소속 부산교육대학교 직위 교수협의회 회장 성명 김용민 (서명 또는 인)

TEL: (063)270-2011

E-MAIL: newknupa29@naver.com

제3차 회장단 회의

- 일 시 : 2026년 6월 19일(금) 15:00
- 장 소 :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관 중회의실

연합회의 제3차 회장단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나 회의 개최 성원(成員)을 위해 상임회장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6월 10일

소속 교수회장 성명 박정준 (서명 또는 인)

E-MAIL: newknupa29@naver.com

제3차 회장단 회의

- 일 시 : 2026년 6월 19일(금) 15:00
- 장 소 :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관 중회의실

연합회의 제3차 회장단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나 회의 개최 성원(成員)을 위해 상임회장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소속 회장 성명 김민수 (서명 또는 인)

E-MAIL: newknupa29@naver.com

제3차 회장단 회의

- 일 시 : 2026년 6월 19일(금) 15:00
- 장 소 :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관 중회의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의 제3차 회장단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나 회의 개최 성원(成員)을 위해 상임회장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6월 18일

소속 제주대학교 직위 회장 성명 정수연 (서명 또는 인)

TEL: (063)270-2011

E-MAIL: newknupa29@naver.com

제3차 회장단 회의

- 일 시 : 2026년 6월 19일(금) 15:00
- 장 소 :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관 중회의실

연합회의 제3차 회장단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나 회의 개최 성원(成員)을 위해 상임회장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소속 회장 성명 박윤경 (서명 또는 인)

E-MAIL: newknupa29@naver.com

제3차 회장단 회의

- 일 시 : 2026년 6월 19일(금) 15:00
- 장 소 :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관 중회의실

연합회의 제3차 회장단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나 회의 개최 성원(成員)을 위해 상임회장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소속 회장 성명 윤해경 (서명 또는 인)

E-MAIL: newknupa29@naver.com

제3차 회장단 회의

- 일 시 : 2026년 6월 19일(금) 15:00
- 장 소 :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관 중회의실

연합회의 제3차 회장단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나 회의 개최 성원(成員)을 위해 상임회장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소속 회장 성명 우경봉 (서명 또는 인)

E-MAIL: newknupa29@naver.com

2 국교련 활동

□ 교수(협의)회 및 교수평의회 회(의)장 의전 관련 자료 조사

- 금오공과대 : 서열 - 총장 뒤, 참여 행사 - 졸업식, 입학식
- 충남대 : 서열 - 총장 뒤, 참여 행사 - 졸업식, 입학식, 개교기념일
- 의전 요청 공문 작성 뒤 배부 전

□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재설계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06월 30일
- 장소 : 국회 소통관
- 내용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 국공립대 교수단체들이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전면 재설계와 정부의 지역 대학 육성 정책의 성공을 위한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한상욱 국교련 상임회장(전북대), 최인철 국교조 위원장(경북대), 이종현 경북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교수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지역 대학 육성 정책이 진정한 성공을 거두려면 국공립대 전체의 상생과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대학 정책 전반의 전면 재설계를 재차 촉구했다.



정부는 극단적인 성과주의에 근거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방향을 재설계하고, 국립대 전체의 교육·연구 여건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5극3특 성장'의 중심기관인 지역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 국립대학의 현실을 개선하기는커녕,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 내부의 인사제도 변화를 강제하는 통제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3개 대학만을 선별하여 우선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노골화하면서, 위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상호 연대하고 협력해야 할 대학사회가 파멸적인 무한경쟁과 분열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평가지표 개편 역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지역 국립대학이 처한 구조적 위기의 책임을 대학과 교수 개인의 혁신역량 부족으로 돌리는 왜곡된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경제효율만을 우선시하는 과도한 성과주의에 근거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헌법적 가치인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 10대 만들기 정책은 수월성과 승자독식의 철학에 근거한 기존 대학정책의 실패를 반성하고 교육 전반의 백년대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혁의 출발점으로 제안된 것이다. 따라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대학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토대 위에서 대학 간 상생발전, 학문생태계의 다양성 보장, 교수들의 교육·연구 역량의 강화,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산학연관 지역 협력의 중심기관으로의 발전을 법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이에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국가중심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대학의 본질을 왜곡하고 학문생태계를 황폐화하는 현행 정책의 기초를 쇠신하고,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지역 국립대학의 균형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진정한 국가 고등교육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개 대학 선별 지원은 국립대 간 서열화를 고착화하고 탈락 대학의 위기를 가속화할 뿐이다!

정부의 '3개 대학 선별 지원' 방식은 명백히 국립대학 간의 인위적인 서열화를 조장하는 정책이다. 몇몇 대학만을 골라 '대표선수'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결국 소수의 '선정 대학'과 대다수의 '탈락 대학'이라는 잔인한 이분법적 구도를 낳을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QS 세계대학평가 순위와 학계에서도 그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FWCI(논문 피인용 영향력) 같은 정량지표를 사실상의 잣대로 삼아 대학을 줄세우는 방식은, '수도권 일극 서열 완화'라는 본래의 명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는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에게 치명적인 낙인 효과를 부여하여 우수한 신입교원과 학생 유입을 차단하고, 결국 지역 대다수 대학의 위기를 건잡을 수 없이 가속화시켜 지역소멸을 재촉하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 자명하다. 전체 국립대학의 교수와 학생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점진적인 자체역량 강화와 자발적인 특성화를 유도하고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지속가능한 정책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되어야 한다.

성과지표는 지원의 '결과'여야지, 사업의 '선정조건'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인과관계가 뒤바뀐 행정편의주의적 논리로 대학 구성원을 옥죄고 있다. 연구 성과와 교육 혁신이라는 결실은 충분한 재정 지원과 안정적인 교육·연구 여건이 담보될 때 비로소 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명문대학은 처음부터 명문대학이었던 것이 아니다. 국가와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훌륭한 교육·연구 여건을 구축하고, 우수 교원과 인재를 유치하여 탁월한 성과를 축적해 왔기에 오늘날의 명성을 갖게 된 것이다.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지역의 대학들에게 무리한 인사 제도 개편과 성과 지표 달성을 선정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가뜩이나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더 많이 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지역대학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수와 학생의 역량을 꽃피게 하는 것이다. 측정하기 쉬운 지표(QS-FWC, 논문 수)를 사업 목표의 대용물로 삼는 순간, 정책은 '지역혁신·정주환경 구축·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의 목표와 단절된 채 숫자 놀음으로 변질된다. 오히려 이러한 지표체계는 장기연구와 기초연구, 정량화되기 힘든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한 학술활동과 교육의 질적 향상 등 학문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국립대학의 근본적 가치를 훼손한다. 무엇보다 단기적인 성과 생산기관으로 전락한 국립대학에서 학문과 교육의 질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외국기관이나 일부 언론의 정량적 평가지표에 대한 맹신과 추종을 지양하고, 정책의 본래 목표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

과거 정책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성장엔진' 사업은 2008~2012년 8,250억원이 투입된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World-Class University: WCU) 육성사업의 교훈에서 배워야 한다. WCU는 '2013년까지 세계 200위권에 국내 대학 10개 진입'을 목표로 내걸었으나, 목표 시점이 한참 지난 2026년에도 QS 200위권에 든 국내 대학은 6개에 그친다. 정부는 이 값비싼 실패에 대한 분석을 완료해 놓고도, 그 정책 평가를 외면한 채 동일한 실패를 되풀이하려 한다. 우리는 정부가 '하고 싶은 정책', '해오던 익숙한 정책'이 아니라 '효과가 검증된 정책', 즉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피폐해진 지역 국립대의 연구·교육 여건을 직시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지역 국립대학들은 고질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난, 그리고 우수 신임 교원 충원의 어려움이라는 삼중고를 겪으며 학문의 다양성과 기초학문 생태계가 비가역적으로 파괴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 반복된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와 소수 첨단 분야로의 편중 투자는 오랜 시간 숙성된 사유가 필요한 기초연구와 장기과제를 고사시키고 있다. 일본이 다수의 노벨상 과학자를 여러 대학에서 배출하는 이유는 연구비 지원액수의 규모가 아닌 생애주기 연구에 대한 수십년간의 장기투자가 동력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신진연구자, 비정규 연구인력, 대학원생들의 연구 환경을 안정화시키고, 학부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문단위 간 균형발전과 대학의 자발적인 특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소수 대학만을 선별하는 졸속 지표 놀음을 그만하고, 교육·연구 여건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장기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단기 성과 중심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항구적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속고되지 않은 정책에 따른 단기성 사업비로는 지역대학을 살릴 수도,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도 없다. 진정으로 지역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선별적 지원을 철회하고 지역 국립대학의 교육과 연구 환경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과 항구적인 예산 보장 여건을 확립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국·공립대학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립대와 수도권대의 교수가 참여하는 네트워크와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대학에 유입되고, 그 인재가 다시 수도권과 지역의 학문과 산업을 지탱하는 진정한 균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나갈 수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획일적인 성과 경쟁과 선별적 서열화로 국립대를 잘못된 방향으로 내모는 정책은 지금의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우리는 특정 첨단 분야에만 몰아주는 지원, 교수들을 교육자의 길이 아닌 단순한 논문 생산 도구로 내모는 사업, 대학 간 지나친 서열화를 구축하려는 계획은 결국 고등교육의 총체적 붕괴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정부의 지역 대학 육성정책의 진정한 성공을 바라는 2만여 국·공립대학 교수들의 염원을 모아 우리 국·공립대학 교수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국립대 서열화를 조장하고 탈락 대학의 위기를 가속하는 '3개 대학 선별 지원'

방식을 폐기하고, 국립대학 전체의 상생과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재정지원을 수단으로 혁신으로 포장된 대학 내부의 인사제도 변화를 강제하

려는 독소적 평가지표 연계 압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단기성과 중심의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근본적

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법제도적인 기반과 항구적인 재정 보장 대책을 수립하라!

2026년 6월 30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 한상욱 상임회장 매일신문 및 EBS 인터뷰

한상욱 전국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상임회장(전북대 사범대학 물리교육 전공 교수)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대해 “고등교육 혁신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추진 방식은 교육기관인 대학의 본질을 외면한 채 단기 성과와 산업 수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회장은 30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육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재를 키우는 일인데, 대학을 기업처럼 평가하고 단기간의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집중 지원 대상을 3개 대학으로 제한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 회장은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지역마다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애초부터 지원 대상을 3개 대학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미 경쟁력이 높은 대학에만 추가 지원을 하는 방식은 정부가 강조하는 국가균형발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산업부처의 논리가 우선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대학은 교육기관인데 사업 성과를 내는 것이 목적이 되면서 교육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산업부나 과기정통부의 논리에 끌려가는 구조가 됐다”며 “기업을 평가하듯 대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발상 자체가 교육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정 첨단산업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된 점도 대학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회장은 “브랜드 단과대학을 만들고 반도체·AI·로봇 등 특정 산업 분야의 성과를 요구하다 보니 결국 이공계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대학이 산업체를 대신해 성과를 내고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근 경북대를 비롯한 일부 거점국립대에서 추진 중인 교수 승진 및 인사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사업 참여 조건으로 교수 승진 기준과 인사제도 혁신까지 요구하면서 전국 국립대들이 승진 기준을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며 “연구 여건이나 처우 개선 없이 기준만 높인다면 지방 국립대가 우수 교원을 유치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사학위를 받고도 기업보다 낮은 처우를 감수하며 지역 대학을 선택하는 이유는 교육과 연구에 대한 사명감 때문”이라며 “승진 기준까지 대폭 강화하면

젊은 교수들이 지방 대학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 회장은 대학 혁신을 위해서는 성과 중심 사업보다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에는 OECD 평균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대학 지원은 OECD 평균의 70% 수준에 머물러 왔다“며 “이번 기회에 대학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 오히려 제한된 예산으로 대학 경쟁력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리라는 과도한 역할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이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자신의 처우 때문만이 아니라 앞으로 대학에서 공부할 미래 세대의 교육을 걱정하기 때문“이라며 “국민들도 우리나라 대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국립창원대학교 총장에 대한 성명서 및 현수막 게시

[성명서] 국립창원대학교 총장은 구성원의 뜻과 불신임 투표의 결과를 존중하라!

최근 국립창원대학교 박민원 총장은 구성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한 경남과학기술원 설립과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립창원대학교 교수회는 투표를 실시하여 참여 교수의 2/3가 넘는 67.7%가 총장을 불신임한다고 결정했다. 총장은 이 엄중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구성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총장이라면 불신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총장은 도리어 교수들의 민주적인 투표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 시도했다. 창원지방법원에 투표 실시 금지 및 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비판에 못 이겨 취하하는가 하면, 언론에 가결 사실을 왜곡하는 정보를 유포하기도 했다. 총장의 이 같은 비상식적 행태에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개탄을 금치 못한다.

국립창원대학교 교수회가 총장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게 된 것은 총장의 비민주적 행태가 반복적으로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26. 1. 21.자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를 무시함으로써 대학민주주의의 가치를 크게 짓밟았다. 대학평의원회는 모든 구성원 대표가 참여하는 학내 최고 심의기구로서 대학평의원회의 결정사항은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 총장은 이를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총장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를 부정하고 교무회의에서 당초 학칙 개정안을 원안 가결 후 공표·시행하였다.

국립창원대학교 대학평의원회가 심의를 통해 부결한 사안은 GAST (글로벌첨단과학기술대학: Glocal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를 3개의 단과대학으로 분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설 단과대학(GAST, GAST-인공지능대학, GAST-기계공학대학) 설치(안)」이었다. 또한 신입교수의 배정에서도 인문·사회·예술·경영·자연·

공과대학의 결원 상황을 외면하고 본인이 만든 GAST에 편중하여 배정함으로써 종합대학의 정체성을 위협하였다. 총장이 대학평의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며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종합대학인 국립창원대학교의 운명을 좌우할 ‘경남과학기술원 전환’ 및 ‘국립대 법인화’를 독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대학의 정체성과 기본 구조를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총장은 이에 대한 구성원의 반대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교수회 전담 직원의 인사 발령까지 거부하여 교수회와 대학평의위원회의 기능 자체를 무력화하려 획책하고 있다.

학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말살한 국립창원대학교 총장의 권한 남용과 교수회 탄압에 대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종합국립대의 가치와 대학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경남과기원 전환 및 국립대 법인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압도적인 총장 불신임 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대학평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대학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억압을 중단하라!

하나, 교수회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교수회 업무 전담직원의 인사 발령을 즉시 실행하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국립창원대학교 교수회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총장에게 있으며,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더욱 강력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7월 6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현수막 문구 (5개 설치)

1. 국립창원대학교 총장은 경남과학기술원 설립 추진을 중단하라!
2. 국립창원대학교 총장은 총장 불신임 투표 결과를 존중하라!
3. 국립창원대학교 총장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
4. 국립창원대학교 총장은 대학평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라!
5. 국립창원대학교 총장은 교수회 직원을 즉시 원상복귀 조치하라!

□ 교연비 헌법소원 준비위원회 및 교권 준칙 제정위원회 구성

1. 교연비 헌법소원 준비위원회

- 구성 (임명기간 : 2026년 7월 1일 ~ 2027년 2월 28일)

위원장 : 이장희 창원대 교수회장님

위원 : 김소연 교수님(전북대 법전원), 김해원 교수님(부산대 법전원), 이권일 교수님(경북대 법전원), 허완중 교수님(전남대 법전원), 홍종현(국립경상대 법전원), 박용숙(강원대 법전원)

2. 교권 준칙 제정위원회

- 구성 (임명기간 : 2026년 7월 1일 ~ 2027년 2월 28일)

위원장 : 조혜영 군산대 교수의장님

위원 : 김민수 전남대 교수회장님, 이정은 경북대 교수회장님, 송지환 전주교대 교수회장님, 장진호 금오공대 교수회장님, 한갑수 강원대-강릉캠퍼스 교수회장님

□ 제4차 정책위원회 개최

○ 일 시: 2026년 7월 10일(금요일) 16:00-18:00

○ 방 식: 대면회의(Zoom의 병행)

○ 참석자: (위원장) 최인호(대면), (위원) 김재관(Zoom), 손영진(Zoom), 박종원(Zoom)

※ 배석: 한상욱(대면), 임정묵(대면), 조혜영(Zoom), 정석호(Zoom)

○ 토의 및 의결사항

안건 1.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응 방안

- 6월 30일, 국중련의 국립창원대 방문 격려와 더불어, 국교조·국중련·거국련 공동으로 국회에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진행
- 국교련 차원에서 그간 제기해 온 3대 요구사항: 거점대 3개 집중 지원 방식의 부당성 → 거점대 전체 및 국중대까지 지원 대상 확대, 공대·농대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여러 학문 분야에 균형 있게 지원, 단기 성과평가 방식에서 중장기적 평가 방식으로 전환
- 일본의 사립대 구조조정(약 40% 폐교) 및 국립대 통합 사례를 참고하되, 구조조정 과정에서 교수·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국교련 차원에서 국공립대학에 대한 고등교육 정책 방향의 제시 필요함.

안전 2 국립대학법 제정 방향

- 국립대학법(안)의 두 축: ① 정부의 총액 지원 의무 확대 — 서울대·인천대(법인) 평균 수준의 재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 지원을 의무 또는 노력의무로 규정(교육비 격차 해소) ② 거버넌스 — 총장 선출(2024년 국교련 정책연구안: 대학평의원회에서 정하는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규정) ③ 법정 교원 확보 기준 준수(다수의 법안은 기준을 강화하고 있음)
- 2024년 국교련 정책연구안의 특색으로 교연비의 수당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국교조(안)은 교연비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여 교직·연구수당으로 지급하는 안으로, 지난 5월 제2차 회장단 회의에서 국교조(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함
- 대학 통·폐합의 기준 및 절차, 통합대학 거버넌스 등과 관련하여, 현행 국립학교설치령에서 세부사항을 교육부 장관 고시(대학 통·폐합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형배 전 의원이 2023년 발의한 국립대학법(안)에는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캠퍼스 부총장의 지위·선출 방식 정도는 법안에 담을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어려워 대학 간 합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정책위원장 발언)이 제시됨
- 정부(교육부)의 의도에 대한 대응 전략
(신중론) 정부·여당의 구체적 입법 방향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에서 선불리 움직이기보다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
(선제 공개론) 국교련이 마련한 안(2~3쪽 요약본)을 먼저 공개하여 여론을 선점하고, 정부·여당과의 협상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 — 다수 참석자가 이 방향에 공감
- 국회 교육위원회 현황과 관련한 우려:
현재 교육위 소속 의원 중 상당수가 원내대표(한병도)·국방부장관(안규백)·행안부장관(윤호중), 전직 법무부장관(박범계) 등 실질적으로 상임위 활동이 어려운 인사로 배정되어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관심도가 낮다는 지적
교육위원장이 야당 몫으로 결정될 경우, 국교련이 원하는 방향의 국립대학법은 상정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 정부의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이에 대비하여 기존에 연구되거나 발의된 표준안을 기초로 자체적으로 국립대학법(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결정함. → 7월 15일 있었던 교육부 대학정책관과의 면담에서 이주희 국장은 교육부 내에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했다고 답변함

- 전체 교수 대상 의견 수렴과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와 논의 필요함

□ 김문수 국회의원실-국교련·국교조 간담회

○ 일 시: 2026년 7월 21일(화요일) 17:00-18:0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김문수 의원실

○ 참석자: 국교련 상임회장 한상욱, 국교련 정책위원장 최인호, 국교조 정책위원장 정세은, 국교조 창원대 지회 위원장 이건혁, 최원석 김문수 의원 선임비서관, 김창민 김문수 의원 보좌관

○ 주요 논의 안건

1. 거점국립대 브랜드대학 사업의 문제점(일명 '서울대 10개 만들기')
 - 국가 균형 발전과 대학서열화 완화를 위하여 전체 거점대 지원 필요
 - 대학 간 그리고 학문 간 네트워크를 통한 공생-확장 생태계 구축
2. 현행 교연비 제도의 폐지와 교육수당·연구수당의 도입 필요성
 - 기형적인 교연비를 폐지하고 교수의 교육수당과 연구수당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함
3. 글로벌 대학 및 라이즈 사업 문제점과 보완 과제
 - 글로벌 대학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한 문제와 필요한 보완 대책
 - 라이즈 사업은 지자체가 아닌 지역대학 협의체가 운영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4. 국립대학법 논의 연혁 및 국교련 입장
5. 창원대 총장의 권한 남용 및 지자체의 대학 개입 문제. 국감 질의 요청

○ 상세 논의 내용

1. 거점국립대 브랜드대학 사업의 문제점(일명 '서울대 10개 만들기')

□ 3개 대학 선별 지원 문제: 나머지 대학 부정적 낙인 효과

- 정부의 '3개 대학 선별 지원' 방식은 국립대학 간의 인위적인 서열화를 조장하는 정책이다. 몇몇 대학만을 골라 '대표선수'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결국 소수의 '선정 대학'과 대다수의 '탈락 대학'이라는 잔인한 이분법적 구도를 낳을 것이다.
- 더구나 정부가 QS 세계대학평가 순위와 학계에서도 그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FWCI(논문 피인용 영향력) 같은 정량지표를 사실상의 잣대로 삼아 대학을 줄 세우는 방식은, '수도권 일극 서열 완화'라는 본래의 명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에게 치명적인 낙인 효과를 부여하여 우수한 신입교원과 학생 유입을 차단하고, 결국 지역 대다수 대학의 위기를 견잡을 수 없이 가속화시켜 지역소멸을 재촉하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 자명하다.

□ 지원의 결과이어야 할 성과지표가 사업의 ‘선정조건’ 이 되는 문제

-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지역의 대학들에게 무리한 인사 제도 개편과 성과 지표 달성을 선정조건으로 내거는 사업 추진 방식은 가뜩이나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 연구 성과와 교육 혁신이라는 결실은 충분한 재정 지원과 안정적인 교육·연구 여건이 담보될 때 비로소 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정부는 인과관계가 뒤바뀐 행정편의주의적 논리로 대학 구성원을 옥죄고 있다.
- 측정하기 쉬운 지표(QS·FWCI·논문 수)를 사업 목표의 대용물로 삼는 순간, 정책은 ‘지역혁신·정주환경 구축·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의 목표와 단절된 채 숫자 놀음으로 변질된다.
- 오히려 이러한 지표체계는 장기연구와 기초연구, 정량화되기 힘든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한 학술활동과 교육의 질적 향상 등 학문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국립대학의 근본적 가치를 훼손한다.
- 무엇보다 단기적인 성과 생산기관으로 전락한 국립대학에서 학문과 교육의 질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외국기관이나 일부 언론의 정량적 평가지표에 대한 맹신과 추종을 지양하고, 정책의 본래 목표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

□ 과거 실패한 사업을 이름만 바꾸어 다시금 시도하고 있는 교육부

-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성장엔진’ 사업은 2008~2012년 8,250억원이 투입된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World-Class University: WCU) 육성사업의 교훈에서 배워야 한다.
- WCU는 ‘2013년까지 세계 200위권에 국내 대학 10개 진입’을 목표로 내걸었으나, 목표 시점이 한참 지난 2026년에도 QS 200위권에 든 국내 대학은 6개에 그친다.
- 정부는 이 값비싼 실패에 대한 분석을 완료해 놓고도, 그 정책 평가를 외면한 채 동일한 실패를 되풀이하려 한다. 우리는 정부가 ‘해오던 익숙한 정책’이 아니라 ‘효과가 검증된 정책’, 즉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이미 피폐해진 지역 국립대의 연구·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설계

- 지역 국립대학들은 고질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난, 그리고 우수 신입 교원 충원의 어려움이라는 삼중고를 겪으며 학문의 다양성과 기초학문 생태계가 비가역적으로 파괴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
- 반복된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와 소수 첨단 분야로의 편중 투자는 오랜 시간 숙성된 사유가 필요한 기초연구와 장기과제를 고사시키고 있다.
- 일본이 노벨상 과학자를 다수, 그것도 여러 대학에서 배출하는 이유는 연구비 지원액수의 규모가 아닌 생애주기 연구에 대한 수십년간의 장기투자가 동력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신진연구자, 비정규 연구인력, 대학원생들의 연구 환경을 안정화시키고, 학부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문단위 간 균형발전과 대학의 자발적인 특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 정부는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소수 대학만을 선별하는 줄속 지표 놀음을 그만하고, 교육·연구 여건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장기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부실한 ‘항구적 지원 체계’와 단기 성과 중심의 예산 지원의 문제

- 숙고되지 않은 정책에 따른 단기성 사업비로는 지역대학을 살릴 수도,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도 없다. 진정으로 지역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선별적 지원을 철회하고 지역 국립대학의 교육과 연구 환경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과 항구적인 예산 보장 여건을 확립해야 한다.
- 아울러 모든 국·공립대학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립대와 수도권대의 우수교수가 참여하는 네트워크와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대학에 유입되고, 그 인재가 다시 수도권과 지역의 학문과 산업을 지탱하는 진정한 균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나갈 수 있다.

□ 지역 국립대와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사업 재설계 절대적으로 필요

- 첫째, 국립대 서열화를 조장하고 탈락 대학의 위기를 가속하는 ‘3개 대학 선별 지원’ 방식을 폐기하고, 국립대학 전체의 상생과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
- 둘째, 재정지원을 수단으로 혁신으로 포장된 대학 내부의 인사제도 변화를 강제하려는 독소적 평가 지표 연계 압박을 즉각 철회할 것.
- 셋째, 단기성과 중심의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법제도적인 기반과 항구적인 재정 보장 대책을 수립할 것.

2. 현행 교연비 제도의 폐지와 교육수당·연구수당 도입 필요성

□ 국립대 교원에 대한 왜곡된 보수체계

- 지역 국립대는 국가균형발전과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입니다.
- 그러나 국립대 교원의 급여는 동일 직급의 일반직 공무원보다 낮고, 초·중등 교원에게 지급되는 교직수당과 연구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교육수당·연구수당 대신 교연비 지급. 연금 60만원 이상 감소 야기

- 국립대 교원은 현재 교직수당과 연구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교육·연구·학생지도비(교연비)를 받고 있는데, 교연비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세소득이면서도 공무원연금의 기준소득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에서 불이익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즉, 국립대 교원들은 평생 세금을 내고도 연금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 40세 전후의 늦은 임용으로 재직기간 자체가 짧은 상황에서, 교연비가 연금에 반영되지 않아 퇴직 후에는 매월 60만 원 이상 연금이 감소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 과거 기성회계 폐지 시, 기형적으로 도입된 교연비

- 교연비는 과거 국립대 기성회계에서 지급되던 정액연구비(낮은 급여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보전성 경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기성회계가 폐지될 때, 서울대학교는 기성회계 기반의 보수체계를 대학의 정규 보수체계 안으로 재편했습니다(법인화 과정) 그러나 다른 국립대에서는 교연비라는 항목으로 남게 되어 보수체계가 정상화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 법령은 교원에 대해 교직수당·연구수당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교육공무원수당 규정).

□ 과제: 추가 예산 없이 교육수당·연구수당으로 전환하는 법 제정으로 해결

- 교육부도 2022년 전국국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과의 단체교섭에서 교직수당과 연구수당 지급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 국교조는 교직수당과 연구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교연비를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즉 이 문제 해결에는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 요구는 국공립대 교원의 처우를 위한 이기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우수한 인재가 지역 국립대학으로 오고, 지역에 정착하여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고등교육을 정상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입니다.

3. 글로컬대학 사업과 라이즈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글로컬대학 사업과 라이즈 사업의 문제점

1. 사업비 늦장 지급 문제

- 두 사업 모두 사업비를 7-8월에 지급하면서, 사업결과보고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정상적인 교육과 연구가 불가능함.

2. 대학 구조조정에 비해 턱없이 작은 글로컬 사업비

- 글로컬 사업비는 연간 200억원 규모인데, 대학 구조조정(대학 간 통폐합, 입학단위 광역화, 무전공 또는 융복합전공 입학 확대 등)을 위하여 턱없이 부족함.

3. 무리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글로컬 사업

- 글로컬 사업은 무리한 대학 간 통합으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도 있고, 무리한 입학 단위 광역화와 무전공 입학 확대로 학생들의 피해가 늘고 있으며 전공 간의 갈등이 생겨나고 있음.

4.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의 라이즈 사업 주도 문제

- 교육과 연구의 전문성과 경험이 전무한 지자체가 지역 대학의 교육을 관리하다 보니,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

5. 경직적인 사업비 운용 시스템

- 두 사업 모두 사업비 지출에서 항목 변경이 불가능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사업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큼.

□ 개선 방안

- 두 사업 모두 연 단위 평가를 3년 단위 평가 체계로 전환해야함.
- 두 사업 모두 사업비 총량 지원제를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글로컬 사업은 교육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한 유연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인 대학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함.
- 해당 지역 대학들로 구성된 대학공동체가 라이즈 사업을 관리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과 산학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4. 국립대학법 논의 연혁 및 국립대학법 제정의 필요성

□ 국립대학법 논의의 주요 연혁

2016년: 국교련 차원의 국립대학법 제정 논의 시작

2017년: 국교련 정책연구 완료 및 첫 법률(안) 마련

2021년: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차원의 법안 재작성

- 국립대 총장단 2021년 정책연구를 다시 수행하여 새로운 국립대학법(안)을 작성함

→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당시 교육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 국립대학법(안)의 제출

2023년: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법안 제출

2024년: 국교련의 최신 정책연구안 마련

* 법안 발의 시도는 총 4회 이루어졌으나, 모두 회기 종료로 폐기

□ 왜 국립대학법이 필요한가 (국교련의 입장)

1)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불안정해 대학 자율성과 민주성이 취약

- 국립대학은 대통령령(국립학교설치령)에 근거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현행 체계는 국립대학을 정부기관(영조물)처럼 취급하는 관료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지위의 독립성 보장 필요

2) 국립대학을 규율하는 고등교육법 등 여러 법률이 산재해 있고, 실질적으로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의해 중요사항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임

- 국립대학 관련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체계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정책의 우선순위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어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어려움

→ 단일법 제정의 필요성

3) 고등교육 재정이 사업비 중심이라 대학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움

- 국립대는 등록금 동결과 고정비 증가로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며, 정부 사업 중심의 단년도 경쟁지원 체계는 대학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제약하고 있음

→ 총액지원의 확대를 통해 재정의 자율성 보장 및 자발적 맞춤형 특성화 지원 필요

4) 지역대학 위기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립대학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립대학법은 현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지역대학을 육성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음

- 학령인구 급감과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국립대는 지역사회 기반 유지·전문 인재 양성·기초학문 보호의 핵심 기관이지만, 현재 법적·제도적 지원은 그 역할을 뒷받침하지 못함

→ 총액지원의 확대는 국립대학 간 지원의 형평성(국가균형발전 기여) 및 학문단위 간 다양성(기초·보호학문 육성) 보장

5) 국립대 구성원의 참여권 보장과 민주적·합리적 의사결정 거버넌스 확립 필요

- 국교련은 구성원 참여 확대를 국립대학법의 핵심 가치로 제시함

→ 교수회의 법적 지위 강화, 대학평의원회의 실질적 심의·의결권 확대, 총장선출 방식에서 교원의 중심적 지위 보장,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등

5. 국립창원대 박민원 총장의 문제(2026.7. 현재)

1) 2026. 6. 22. 박민원 총장 불신임 투표 가결

남해/거창캠을 포함한 전체 전임교수 385명 중 86% 투표, 투표자 68% 찬성.

→ 그러나 전혀 결과 수용 없고, 태도 변화 없음. 오히려 교수회 무시, 무력화 시도

사유1) 종합국립대를 과학기술원 전환 및 법인화 시도

→ 법적 권한, 근거, 논리, 타당성, 구성원 동의도 없는 ‘종합국립대 해체 시도’ (→ 학교예산으로 비공개 연구용역, 밀실 추진, 글로벌 사업계획서에도 없었음 → 박완수후보 공약으로 발표&학내 설명회 개최)

→ 학문 다양성(생태계) 및 대학 공공성, 지역 발전을 훼손, 특히 법인화는 지역 국립대학의 ‘사유화’ 위험 (현 단임제 총장임에도 임기 연장, 장기집권 우려) ※ 최근 총장은 측근을 통해 연임 의지를 밝힘

사유2) 인사권의 남용

→ 대학 인사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추대된 명예교수 및 사회대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된 사회대 학장 임명 거부 (→ 후보자에 대한 총장 개인의 사적 감정과 불편함을 이유로 임명 거부, 공적 권한의 사유화)

→ 인사 불이익으로 ‘입막음’의 효과, 1년의 장기간 학장 공백 사태로 대학의 자치 및 학습권 침해 지속

추가1) 인사비리 의혹: 총장의 고교 동문, 지인 등 사적 인맥의 외부인사를 사무국장·대학원장 임용 등

추가2) 특정 단과대(GAST)에 신입교수 불공정·편중 배정 → 과기원 준비 의심, 학문의 자유와 종합대학 체제 위협

사유3) 대학 민주주의 부정, 기본권 침해

→ 고등교육법상 법정 기구인 대학평의원회의의 의결 무시, 「고등교육법」 위반: 대학평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을 교무회의에서 통과시켜 특정 단과대학(GAST)을 무단으로 설립

추가1) 교수회의 불신임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사무국장이 선관위를 방문하여 법적 문제 제기를 운운하며 K-Voting 사용을 불허시킴 → 교수회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

추가2) 교수회가 이후 민간투표시스템을 이용하자 22일 법원에 총장이 교수회 상대로 가처분 소송 제기(박민원 개인의 인격권 보전목적, 불신임투표중단 및 결과공포금지, 위반행위 1회당 1천만원 지급)

→ 교수회의 표현의 자유 침해, 입막음 봉쇄소송, 대학 민주주의 훼손/ 대학본부는 방어권 차원에서 본부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언론보도 참조]

추가3) 23일 불신임 투표 종료 직후 가짜뉴스를 유포하여 언론(포털)에 ‘부결’로 도배, “교수회는 난처하게 됐다” →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명예 훼손

추가4) 국교련과 교수회가 게시한 현수막(총장은 과기원 전환 및 법인화 시도를 중단하라)을 강제 철거, 총장/학교 홍보 현수막을 게시 → 교수회 및 국교련의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를 침해

추가5) 교수회 무력화 시도, 직원 발령 거부 → 7.1. 자 직원인사로 교수회 담당 직원의 타부서 발령 후 교수회 담당 직원 발령 없음 (직원을 추천해 달라 → 추천한 직원들이 교수회에 가길 원하지 않는다?)

사유4) 기타 독선과 독단, 차별/불투명한 재정지출 등

→ 일방적 정문 폐쇄, 학교상징 변경(봉황→늑대), 글로벌사업비 단대별 차별, 성벽공사등 토목공사비 지출 등

2) 총장의 연구부정 의혹 : 총장 선거 당시 본인이 제출한 논문(기존) +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논문들(추가)

→ 당시 연구부정의 문제를 제기했던 교수의 명예교수 발령 거부(사적 인사 보복)

3) 해결 방향 → 압도적 총장 불신임 의미 재확인/총장 자진사퇴 요구, 지역종합국립대의 법인화(&과기원)의 위헌/위법/부당성 확인, 인사권남용(비리) 및 학내 민주주의와 기본권침해 등 책임 추궁, 차별·불투명한 재정지출 감사(교육부, 감사원 등), 연구부정 전면 재조사*, 권력의 사유화/남용 등 책임으로 총장 징계(해임) 요구

참고) 최근 한국연구재단은 박민원 총장의 논문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를 통보하면서, 재조사 권고에 대한 회신이 상당 기간 지연된 점, 절차적 하자를 해소하기 위한 재조사임에도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연구진실성위원회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함
→ 검증의 대상이자 최종 인사권자인 총장 재임 중에, 총장 직속 기구가 수행한 셀프 검증의 한계가 재단의 공식 문서로 확인된 것

3 공문 발신 및 수신

☐ 발신 공문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회비 입금 확인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 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참 조

제 목 회비 입금 확인서

1.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으로 납부하신 회비(참가비)의 입금이 확인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전북은행의 거래정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예금거래내역조회

조회기준일시 : 2026.06.26 10:42:21

조회기간 : 2026.05.01 ~ 2026.06.26

· 상세정보

예금주명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		계좌번호		1013-01-6270963	
계좌명		JB 법인 주거래 통장(보통)		출금가능금액			
거래일자	거래시간	출금금액	입금금액	거래후잔액	적요	취급은행(지점)	
2026.06.09	18:04:40	0	1,000,000		* 국민한국방송통신대학	전북(자금부)	
출금건수 : 0건 / 출금합계 : 0원				입금건수 : 1건 / 입금합계 : 1,000,000원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간사 공하영

사무총장 정석호

상임회장 한상욱

시행 국교련 29-031(2026. 06. 26.)

주소 (5489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전북대학교 진수당 364호 국교련)

전화 063-270-2011

E-mail: newknupa29@naver.com/ 공개

2. 교수회(의)장 의전에 관한 요청 (미발송)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 신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

참 조

제 목 교수회(의)장 의전에 관한 요청

1.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대학평의위원회, 재정위원회 및 총장추천위원회 등의 운영에 참여하며 대학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각 대학 교수회(교수평의회·교수협의회 포함) 회(의)장에 대한 의전이 일부 대학에서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3. 각 국공립대학의 총장님께서서는 교수님들의 투표에 의해 당선되신 교수회(의)장의 학내외 행사에 초청하실 경우 부총장에 앞선 의전 순위를 반드시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4. 의전 예시 :
졸업식, 입학식, 개교기념일 행사의 경우 총동창회장님 다음 위치 및 축하
교수 퇴임식, 총장 이임식, 총장 취임식의 경우 부총장 전 위치 및 축하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간사 공하영

사무총장 정석호

상임회장 한상욱

시행 국교련 29-032(2026. 06. 27.)

주소 (5489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전북대학교 진수당 364호 국교련)

전화 063-270-2011

E-mail: newknupa29@naver.com/ 공개

3. 제3차 회장단 회의 참석 여부 확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 신 전체 회원교 교수(협의)회 및 평의(원)회, 정책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참 조

제 목 제29대 국교련 제4차 회장단 회의 참석 여부 확인

1. 귀 대학 교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아래와 같이 제29대 국교련 3차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오니, 국교련 회원교 회(의)장 및 임원분들과 국교련 관련 위원님들께서는 **참석 여부**를 붙임파일에 작성하시어 **7월3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2026년 7월 24일(금) 오후 3시 ~ 25일(토) 오후 12시

나. 장소: 국립경국대학교 대학별관 4층 401호 회의실

다. 주요 일정(안)

날짜	시간	행사 내용	장소
7월 24일(금)	14:30 ~ 15:00	등록	대학별관 4층 401호 회의실
	15:00 ~ 18:00	제29대 국교련 제3차 회장단 회의 주요 안건: - 활동 보고 및 안건 토의	
	18:30 ~ 21:00	만찬 및 자유 토의	청록한정식
7월 25일(토)	09:30 ~ 12:00	국교련 네트워크 강화 간담회	대학별관 401호

3. 붙임 문서: [국교련29-033] 붙임1. 제29대 국교련 제3차 회장단 회의 참석자 명단(서식)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간사 공하영

사무총장 정석호

상임회장 한상욱

시행 국교련 29-033(2026. 06. 29.)

주소 (5489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전북대학교 진수당 364호 국교련)

전화 063-270-2011

E-mail: newknupa29@naver.com/ 공개

4. 제29대 국교련 회비 납부 독촉 요청(한국교원대학교)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 신 한국교원대학교

참 조

제 목 제29대 국교련 회원교 회비 납부 요청[독촉]

1.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29대 국교련의 운영을 위하여 2026년도 국교련 참가비 납부를 지난 4월 요청드렸으나, 아직 납부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독촉을 드립니다. 아래 계좌로 7월 15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29대 국교련 참가비는 임시총회에서 결정되었으며, 대학회계 예산편성 지침 14페이지의 조항에 따라 구체적인 협의회의 일시, 장소, 참석대상, 목적, 교당 소요액을 결정하였으며 아래 일정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2026년도 참가비 금액 : 1,500,000원
5. 붙임 문서: [국교련29-011] 붙임1_국교련 통장 사본

- 아 래 -

은행 : 전북은행

계좌번호 : 1013-01-6270963

예금주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5. 국립창원대학교 총장에 대한 국교련 성명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 신 국립창원대학교 총장

참 조

제 목 국립창원대학교 총장에 대한 국교련 성명서

1.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에서는 교수회의 존재를 불인정하고 교수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 불신임에 대해 언론에 잘못된 형태로 보도하는 등 대학의 자유와 민주적인 절차를 심각하게 파행하는 국립창원대학교 박민원 총장님에게 강력하게 유감을 표의하는 바입니다.
3. 국교련 회(의)장님의 뜻을 모아 국립창원대학교 총장님에 대한 성명서를 붙임 파일과 같이 보내 드립니다.
4. 붙임 문서: [국교련29-035] 국립창원대학교 총장에 대한 국교련 성명서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간사 공하영

사무총장 정석호

상임회장 한상욱

시행 국교련 29-035(2026. 07. 06.)

주소 (5489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전북대학교 진수당 364호 국교련)

전화 063-270-2011

E-mail: newknupa29@naver.com/ 공개

[성명서] 국립창원대학교 총장은 구성원의 뜻과 불신임 투표의 결과를 존중하라!

최근 국립창원대학교 박민원 총장은 구성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한 경남과학기술원 설립과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립창원대학교 교수회는 투표를 실시하여 참여 교수의 2/3가 넘는 67.7%가 총장을 불신임한다고 결정했다. 총장은 이 엄중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구성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총장이라면 불신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총장은 도리어 교수들의 민주적인 투표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 시도했다. 창원지방법원에 투표 실시 금지 및 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비판에 못 이겨 취하하는가 하면, 언론에 가결 사실을 왜곡하는 정보를 유포하기도 했다. 총장의 이 같은 비상식적 행태에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개탄을 금치 못한다.

국립창원대학교 교수회가 총장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게 된 것은 총장의 비민주적 행태가 반복적으로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26. 1. 21.자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를 무시함으로써 대학민주주의의 가치를 크게 짓밟았다. 대학평의원회는 모든 구성원 대표가 참여하는 학내 최고 심의기구로서 대학평의원회의 결정사항은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 총장은 이를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총장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를 부정하고 교무회의에서 당초 학칙 개정안을 원안 가결 후 공포·시행하였다.

국립창원대학교 대학평의원회가 심의를 통해 부결한 사안은 GAST (글로벌첨단과학기술대학: Global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를 3개의 단과대학으로 분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설 단과대학(GAST, GAST-인공지능대학, GAST-기계공학대학) 설치(안)」이었다. 또한 신입교수의 배정에서도 인문·사회·예술·경영·자연·

공과대학의 결원 상황을 외면하고 본인이 만든 GAST에 편중하여 배정함으로써 종합대학의 정체성을 위협하였다. 총장이 대학평의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며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종합대학인 국립창원대학교의 운명을 좌우할 ‘경남과학기술원 전환’ 및 ‘국립대 법인화’를 독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대학의 정체성과 기본 구조를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총장은 이에 대한 구성원의 반대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교수회 전담 직원의 인사 발령까지 거부하여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의 기능 자체를 무력화하려 획책하고 있다.

학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말살한 국립창원대학교 총장의 권한 남용과 교수회 탄압에 대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종합국립대의 가치와 대학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경남과기원 전환 및 국립대 법인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압도적인 총장 불신임 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대학평의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대학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억압을 중단하라!

하나, 교수회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교수회 업무 전담직원의 인사 발령을 즉시 실행하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국립창원대학교 교수회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총장에게 있으며,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더욱 강력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7월 6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6. 제4차 정책위원회 회의 참석 요청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 신 제29대 국교련 정책위원

참 조

제 목 제29대 국교련 제4차 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및 참석 요청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아래와 같이 제29대 제4차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국교련 정책위원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2026년 7월 10일(금) 오후 4시 ~ 6시

나. 장소: 전북대학교 진수당 교수회장실 (365호)

준회의 ID: 860 0837 7384

암호: 501283

다. 안건

1) 국립대학법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2) 기타

라. 정책위원 명단: 최인호(충남대), 김재관(전남대), 박상식(경상대), 박종원(부경대), 손영진(순천대), 이용기(교원대)

마. 배석인 명단: 한상욱 상임회장, 임정묵 상임위원, 조혜영 상임위원, 정석호 사무총장, 공하영 간사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간사 공하영

사무총장 정석호

상임회장 한상욱

시행 국교련 29-036 (2026. 07. 07.)

주소 (5489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전북대학교 진수당 364호 국교련)

전화 063-270-2011

E-mail: newknupa29@naver.com/ 공개

7. 제1차 교권준칙제정위원회 회의 참석 요청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 신 제29대 교권준칙제정위원회

참 조

제 목 제29대 국교련 제1차 교권준칙제정위원회 회의 참석 요청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아래와 같이 제29대 제1차 교권준칙제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국교련 정책위원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2026년 7월 14일(화) 오후 4시 ~ 6시

나. 장소: 온라인 줌회의

다. 안건

- 1) TF 기본 방형[철학]에 대한 논의 및 합의
- 2) 준칙의 구성 논의 및 합의
- 3) 역할 분담 및 공통 과제 부여
- 4) 향후 추진 일정 논의

- 라. 위원 명단: 조혜영(국립군산대), 김민수(전남대), 이정은(경북대),
장진호(국립금오공대), 한갑수(강원대 강릉캠퍼스), 송지환(전주교대)
3. 불임문서 : [국교련29-037] 불임 1. 제1회 교권준칙제정위원회 회의 자료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간사 공하영

사무총장 정석호

상임회장 한상욱

시행 국교련 29-036 (2026. 07. 07.)

주소 (5489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전북대학교 진수당 364호 국교련)

전화 063-270-2011

E-mail: newknupa29@naver.com/ 공개

8. 제4차 회장단 회의 참석 요청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 신 전체 회원교 교수(협의)회 및 평의(원)회, 정책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참 조

제 목 제29대 국교련 제4차 회장단 회의 참석 요청

1. 귀 대학 교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아래와 같이 제29대 국교련 제4차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오니, 국교련 회원교 회(의)장 및 임원분들과 국교련 관련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회원교에서는 붙임 1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7월 20일(월)까지 회신해 주십시오.
4. 불참하시는 회원교에서는 붙임 2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붙임 문서: [국교련29-038] 붙임1. 국교련 안건 제안서
[국교련29-038] 붙임2. 제4차 회장단 회의 위임장

- 아 래 -

가. 일시: 2026년 7월 24일(금) 오후 3시 ~ 25일(토) 오후 12시

나. 장소: 국립경국대학교 대학별관 4층 401호 회의실

다. 주요 일정(안)

날짜	시간	행사 내용	장소
7월 24일(금)	14:30 ~ 15:00	등록	대학별관 4층 401호 회의실
	15:10 ~ 18:00	제29대 국교련 제4차 회장단 회의 - 주요 토의 안건 1. 국립대학법 제정 안 준비 2. 교연비 헌법소원 준비 3. 교권 준칙 제정 준비 4. 기타	
	18:30 ~ 21:00	만찬 및 자유 토의	청록한정식
7월 25일(토)	10:00 ~ 12:00	국교련 네트워크 강화 간담회	대학별관 401호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간사 공하영

사무총장 정석호

상임회장 한상욱

시행 국교련 29-038(2026. 07. 14.)

주소 (5489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전북대학교 진수당 364호 국교련)

전화 063-270-2011

E-mail: newknupa@naver.com/ 공개

9.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 요청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 신 제29대 국교련 상임위원

참 조

제 목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 요청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아래와 같이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가 대상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2026년 7월 21일(금) 오후 12시

나. 장소: 익산역 인근(추후 장소 공지)

다. 안건

회의 시 자료 배포

라. 참가자 명단: 한상욱 상임회장, 임정묵 회장, 조혜영 의장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간사 공하영

사무총장 정석호

상임회장 한상욱

시행 국교련 29-039(2026. 07. 15.)

주소 (5489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전북대학교 진수당 364호 국교련)

전화 063-270-2011

E-mail: newknupa29@naver.com/ 공개

10. 제1차 자문위원회 참석 요청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 신 제29대 국교련 자문위원

참 조

제 목 제29대 국교련 제1차 자문위원회 참석 요청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아래와 같이 제29대 제4차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국교련 정책위원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2026년 7월 20일(월) 오후 6시 ~ 8시

나. 장소: 상춘고택(청주시 소재)

다. 안건

1) 국립대학법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2) 기타

라. 참석자 명단: 박종진, 최인호, 김재관, 임정묵, 한상욱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간사 공하영

사무총장 정석호

상임회장 한상욱

시행 국교련 29-040 (2026. 07. 16.)

주소 (5489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전북대학교 진수당 364호 국교련)

전화 063-270-2011

E-mail: newknupa29@naver.com/ 공개

11. 김문수 국회의원 좌담 참석 요청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 신 한상욱 상임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회장

참 조

제 목 김문수 국회의원 좌담회 참석 요청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아래와 같이 김문수 국회의원 좌담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2026년 7월 21일(화) 오후 5시

나. 장소: 국회의원회관

다. 주요 토의 안건

- 1) S10 사업 재설계의 필요성
- 2) 교연비 수당화의 필요성
- 3) 글로컬 사업과 라이즈 사업의 문제
- 4) 국립대학법 제정
- 5) 국공립대학 총장의 권한남용 및 지자체의 대학 개입 문제
- 6) 기타

라. 참석 대상자 명단: 김문수 국회의원, 한상욱 상임위원장, 정세은 국교조 정책위원장, 최인철 국교조 위원장, 이건혁 국교조 창원대 지회장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간사 공하영

사무총장 정석호

상임회장 한상욱

시행 국교련 29-041 (2026. 07. 19.)

주소 (5489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전북대학교 진수당 364호 국교련)

전화 063-270-2011

E-mail: newknupa29@naver.com/ 공개

12. 제주대학교 국교련 회비 과오납 반환 안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 신 제주대학교 교수회

참 조

제 목 2026년도 국교련 회비 금액 정정 및 과오납 반환 안내

1. 귀 대학의 교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년도 국교련 회비 납부 요청 공문(국교련29-011_2026.03.31.)과 관련하여 참가비 금액 안내에 행정상 착오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2026년도 참가비 금액은 금5,000,000원(금오백만원)이나 금6,000,000원(금육백만원)이 납부되어 금1,000,000원(금일백만원)이 과오납되었습니다.
4. 이에 과오 납입금 금1,000,000원(금일백만원)을 아래 계좌로 반환하고 입금확인증을 별도로 송부하겠습니다.

- 아 래 -

- 은행명: 농협
- 계좌번호: 301-0167-9623-71
- 예금주: 제주대학교

5. 붙임 파일 : 입금확인증 1부(입금 후 별도 송부)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간사 공하영	사무총장 정석호	상임회장 한상욱
시행 국교련 29-042 (2026. 07. 20.)		
주소 (5489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전북대학교 진수당 364호 국교련)		
전화 063-270-2011	E-mail: newknupa29@naver.com/ 공개	

☐ 수신 공문

- 없음

Ⅱ. 안전 토의

1 국립대학법 제정(안) 준비

□ 국립대학법(안)의 특징과 제정취지

1. 특징

※ 추가: 통·폐합 기준·절차 및 통합대학 거버넌스

-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단일법으로 포괄적인 성격의 특별법을 지향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내용을 가능한 유지하는 보수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방법 채택
 -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립학교설치령,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조문을 준용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조문으로 대부분 구성
- 대학의 자율성, 교육제도, 교육재정,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 등 중요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근거규정을 상향하여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구현하여 민주적 통제 강화

〈국립대학법(안)의 가치모델〉

대학 측면	국가(정부) 측면
민주적·합리적 의사결정의 구조 확립	대학의 자율성 보장
사회적 책임 이행	지원·육성 의무(총액지원 확대)

↓

국가균형발전, 국가(대학)경쟁력 향상,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2. 제정취지

-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임 및 국립대학의 지원·육성에 대한 정부의 공적 책임을 명기하고, 헌법의 취지에 맞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내 거버넌스의 확립을 통해 지역대학의 중추인 국립대학을 집중 육성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국가균형발전, 대학의 경쟁력 향상

II. 국립대학법(안)의 구성과 주요골자

1. 구성과 체계

제1장 총 칙	제2장 설립·조직 및 운영
• 적용범위 • 국가의 공적 책임 •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임 • 타법과의 관계	•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 • 총장의 임용 • 구성원과 자치조직, 대학평의회 • 전임교원의 확보기준
제3장 재정 지원	제4장 재정·회계
• 총액지원의 확대 • 국립대학재정심의위원회	• 재정위원회 • 교육·연구·학생지도비의 지급

2. 주요골자(2024년 국교련 정책연구안 기준: 2021년 유기홍안의 일부 수정·보완)

(1) 적용범위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대학
 - 국립대학법인(서울대·인천대)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한국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국가가 설립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 규율되는 대학 제외, 다만 한국방송통신대 포함 ※ 공립대학에 대해서는 제4장 준용

(2) 국가와의 관계

- 공법상 사단의 지위 부여하여 독립성 보장(“국립대학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독립적인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3) 총장의 선출과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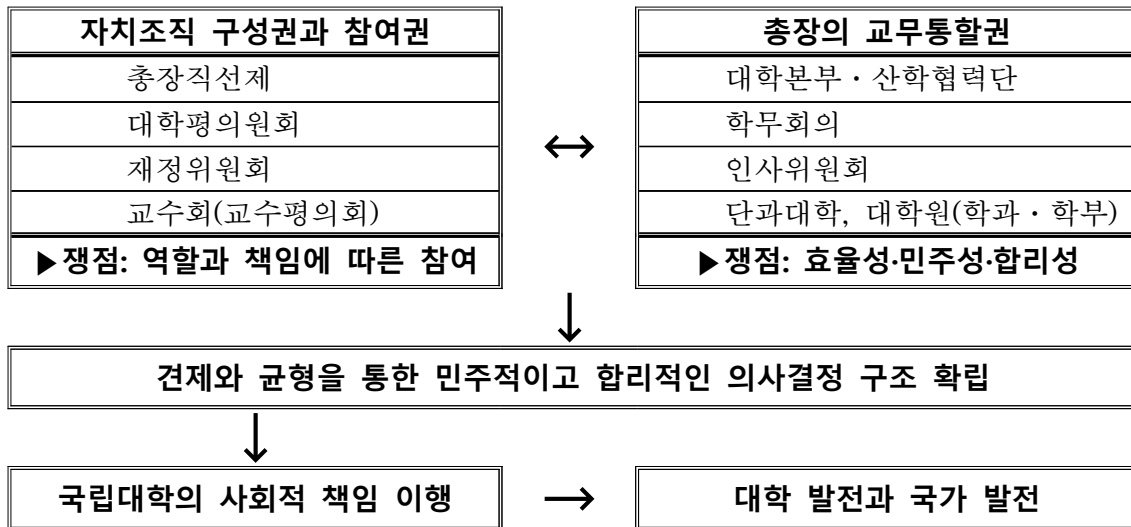
(가) 총장의 선출방식(직선제)

- ‘대학평의회에서 결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 선정, 기타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준용

(나) 구성원의 지위와 참여권(대학자치)

- 교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 구성원의 지위와 권리(자치조직 구성권과 참여권) 보장

〈거버넌스의 구성요소와 쟁점〉



(다) 대학평의회 ※ (대안) 심의기능 확대 AND/OR 의결사항 일부 추가

- 심의기구의 성격을 유지하되, 심의결과에 대한 총장의 존중의무와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설명의무를 규정하여 그 한계 보완, 기타 사항은 고등교육법 준용

(라) 재정위원회

※ (대안) 심의기능 확대 AND/OR 의결사항 일부 추가, 당연직 위원의 비중 약화

- 재정위원회의 인적 구성 변경
 - 11명 이상 15명 이하 → 11명 이상 19명 이하, 강사와 조교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포함
- 심의결과에 대한 총장의 존중의무와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설명의무 규정
- 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

(4) 국가(정부)의 지원·육성의무

- 포괄적 총액지원의무 법제화(총액지원의 확대)
 - 의무규정 형식(1안)과 가능규정 형식(2안)의 2개안 제시
- 국립대학 법인 소속 재학생 1인당 평균 국고지원금 수준에서 지원 ※ (대안1) 서울대법인 수준
 - 의무규정 형식(1안)과 노력의무 규정 형식(2안)의 2개안 제시 (대안2) 1인당 교육비 기준
-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국립대학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의무 규정(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관련)

(5) 법정 교원확보기준 준수 ※ (대안) 법정 교원확보기준 강화

-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원 확보(“국가는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대학이 적정 규모의 전임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교원확보기준이 준수되지 못했고, 국립대학 간 법정교원 대비 배정교원의 비율이 서로 다르고 큰 격차가 발생한 문제점 해결

(6) 교육·연구·학생지도비의 지급방식 개선(사업비 → 급여) ※ (대안) 공무원수당규정 개정

- 교육·연구 수당으로 규정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I. **국립대학법(안)의 특징과 제정취지**

□ 2024년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정책연구(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의 설립·운영과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 학문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대학(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국립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국가가 설립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 규율되는 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공립대학”이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은 “공립대학”으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3조(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국가는 국립대학과 그 구성원(이 조에서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학생을 말한다)에게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국립대학의 사회적 책임) ① 국립대학은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은 양질의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복지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은 학생을 선발할 때 소득이나 지역 등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립대학은 제3항에 따른 학생의 교육·장학·선발 등의 계획 및 결과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립대학은 지역의 산업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과 지역인재의 취업 확대 및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 등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국립대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4조에 따른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이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립대학의 설립·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다.

제2장 국립대학의 설립·조직 및 운영

제7조(법적 지위) 국립대학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독립적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조(명칭 등) 국립대학의 명칭과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총장) ① 국립대학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③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임할 수 있다.

제10조(총장의 임용) ① 국립대학의 총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국립대학의 총장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2.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설치된 대학평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④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총장을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⑦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해당 총장 임용된 사람이 제28조 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총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총장 후보자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총장 후보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

는 행위

2.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위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총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4. 전화·문자메세지·e-mail을 이용한 지지 호소
5.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제12조(선거사무의 위탁) ① 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총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할 때의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9조(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각 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총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를 적용한다.

④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대학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부총장) ① 국립대학 운영과 관련한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대학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부총장은 국립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국립대학발전위원회) ① 국립대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학의 총장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학발전위원회를 둔다.

1. 국립대학의 교육·연구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립대학의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4. 제29조에 따른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립대학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립대학발전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발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이를 해당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국립대학 발전종합계획의 수립·평가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마다 국립대학 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총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마다 해당 국립대학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의 총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발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대학별 발전계획의 운영성과를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단과대학과 대학원) ① 대학은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교육대학은 대학원을 각각 둘 수 있다.

② 대학의 단과대학(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학을 말한다) 및 대학원에 학과 및 학부를, 교육대학 및 그 대학원에 학과를, 전문대학에 학과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과대학·대학원·학과 및 학부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학과 및 학부의 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둔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장은 다른 대학원의 장이나 관련 단과대학 또는 학부의 장 중에서 둘 수 있다.

④ 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 및 학부의 장은 단과대학의 장(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장을 말한다)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대학원·학과 및 학부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⑤ 교육대학의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의 장은 총장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 및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⑥ 전문대학의 학과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⑦ 단과대학장·대학원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대학의 하부조직) ① 국립대학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직의 보직을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사무국장과 행정본부장, 교육대학의 총무처장은 해당 대학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8조(국책연구소 설치 등) 국립대학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연구를 위한 연구소를 둘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① 각 학교의 조직, 부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② 총장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조직 및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하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부설학교) ① 국립대학의 사범계 단과대학(이하 이 조에서 “사범대학”이라 한다) 및 교육대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를 부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에 장을 각각 두되, 부설학교의 장은 사범대학의 장 또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학교의 교무를 총괄한다.

③ 부설학교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을 둔다. 교원 및 직원은 총장이 임면한다.

제21조(국립대학 구성원과 자치조직) ① 국립대학의 구성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수·강사·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학생으로 한다.

② 국립대학에 교수회를 둔다. 교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국립대학의 강사, 직원, 조교 및 학생은 구성단위별로 자치조직을 두며,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국립대학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국가와 국립대학은 구성원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대학평의위원회) ① 국립대학에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총장은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총장이 대학평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총장은 그 합리적 이유를 대학평의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충분한 공무원 정원을 배정하여야 하며, 국립대학의 공무원 정원을 배정함에 있어 대학 간에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국립대학 교원 확보의 기준) 국가는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대학이 적정규모의 전임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교직원 등) ① 국립대학에 교직원과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

② 국립대학의 교수·부교수는 총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총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국립대학의 조교는 총장이 임용하고, 겸임교원 등은 총장이 임용하거나 위촉한다.

③ 국립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에는 제26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국립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교육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은 학문적 능력과 연구성과 등을 반영한 평가결과에 의한다.

⑤ 국립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립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⑦ 국립대학의 교직원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제26조(대학인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1. 부총장,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에 대한 보직 동의
2.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임용 동의
3. 그 밖에 국립대학 교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

② 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회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제27조(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국립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학비보조)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학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장 국립대학 재정 지원

제2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안] 국가는 종전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교육·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금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국립대학재정지원금”이라 한다)를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안] 국가는 종전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

려하여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교육·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금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국립대학재정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하여야 하며,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립대학재정지원금을 총액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안] 국가는 국립대학 소속 학생과 국립대학 법인 소속 학생의 1인당 평균 국고지원금 간의 격차가 없어질 때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립대학재정지원금의 총액을 매년 확대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안]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립대학재정지원금의 총액을 매년 확대하여, 국립대학 소속 학생 1인당 평균 국고지원금이 국립대학 법인 소속 학생 1인당 평균 국고지원금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립대학재정지원금은 국립대학의 규모와 특성, 학생 수, 교직원 수, 국립대학 법인의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연구의 질 향상 및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대학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대학에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0조(국립대학재정심의위원회) ① 국립대학재정지원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학재정심의위원회를 둔다.

1. 국립대학재정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2. 국립대학재정지원금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국립대학재정지원금의 감액, 환수 및 제외 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립대학재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국립대학재정심의위원회) (삭제) [제2안]

제31조(보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대학재정지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국립대학 재정·회계

제32조(국립대학의 재정 책임) ① 국립대학은 해당 대학의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은 해당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재정 운영 등의 기준)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재정·회계규정) ① 국립대학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재정·회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이 재정·회계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사전에 공고하고 사후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5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은 11명 이상 19명 이하로 하고 그 정수는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며,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③ 재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고,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직위원은 제1호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직원, 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 강사, 조교는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대학의 총장은 일반직위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대학의 교원, 직원, 재학생, 강사, 조교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2.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이를 대신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3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제55조에 따른 교육·연구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⑥ 총장은 제5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총장은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심의·의결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위원과 교직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위원회는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間)서명 또는 간(間)인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개기간·절차 등 회의록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제38조(대학회계) ① 국립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국립대학에 제29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

② 대학회계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③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교육과정, 공개강좌, 산업체 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시간제 등록 등에 따른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록생의 수업료
3. 해당 대학에 입학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전형료
4.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5. 수수료·사용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6. 이월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이자수입
9. 무형자산 및 도서매각대금
10. 제53조제3항에 따라 귀속된 국유재산 처분 수입금
11. 그 밖의 수입

④ 대학회계의 세출은 국립대학의 교육·연구·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한다.

⑤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⑥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회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의 회계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대한 종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대학회계의 운영 원칙) ① 국립대학은 대학회계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정건전성의 확보
2. 학생 및 학부모 부담의 최소화
3. 교육 및 연구 역량의 강화
4. 건전하고 투명한 예·결산의 운영

② 국가는 국립대학이 제1항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재정·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0조(대학회계 수입의 세입 편입 후 사용) 국립대학 대학회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편입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보증금, 보관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위원회는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총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세출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총장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는 때에는 수정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42조(예비비) ① 국립대학의 총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학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에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계속비) ① 총장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추가경정예산) 총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5조(예산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총장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재정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경비는 해당 연도의 예산이 의결되면 그 의결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원, 강사, 조교 및 직원 등의 보수
2. 국가지원경비
3.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4.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5.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6.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경비

제4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총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7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연도 지출로 명시된 금액

③ 총장이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경우 그 이월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48조(결산) ① 총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9조(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총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의 발생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제출할 때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0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대학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1조(예산·결산의 공개 등) ① 총장은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예산, 결산의 내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대학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와 제49조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이 위탁된 국립 각종학교의 장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회계간 전입·전출) ① 총장은 각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한 목적사업·수익사업 또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회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의 회계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 간에 재원의 일부를 전입·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학회계의 재원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간 전입·전출의 허용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재산관리) ①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 토지 및 물품은 국유재산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국유재산법」 제26조의3 제4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른 대학회계의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다.

제54조(수업료 등) ① 총장은 수업료 등을 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수준,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 수업료 등이 물가 및 국민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수업료 등을 정하는 경우 미리 수업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교육·연구수당 등의 지급) ①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에 도 불구하고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6조(대학회계직원의 채용) ① 총장은 대학 운영상 필요한 경우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국가공무원 이외의 직원(이하 “대학회계직원”이라 한다)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대학회계직원의 임용,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제57조(공립대학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특칙)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립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등 공립대학이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교연비 헌법 소원 준비

□ 제1차 교연비 헌법소원 준비 위원회

○ 일시: 2026년 7월 23일(목) 오전 10시

○ 참석자: 위원장 이장희(창원대), 부위원장 허완중(전남대), 위원 김해원(부산대),
홍종현(경상대), 배석자(한상욱, 정석호, 공하영) (불참자) 김소연(전북대), 이권일(경북대), 박용숙(강원대)

○ 논의 및 합의 내용

1. 교연비 헌법소원 타당성 공유

- 이장희 위원장이 1차 국교련 회장단 회의 때 국교조 최인철 위원장이 발표한 “교연비 급여화의 당위성과 전략” 내용을 공유함.
- 김해원 위원 의견, 기성회비는 정부가 인정한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수당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에 대한 반론이 필요

2. TF 업무 분담

- 이장희 교수를 위원장으로 허완중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호선텐.
- 위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자료를 검토하고 논의를 거쳐 여름 방학 중에 교연비의 헌법소원 제기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진행함.
- 이후 진행할 내용
 - ① 청구서 검토 및 정리
 - ② 사실관계 정리
 - ③ 적법 요건(각 대학별 검토)
 - ④ 청구이유
 - ⑤ 변호사 대리인(법무법인 이공)을 통해 헌법소원 진행
 - ⑥ 교육부 답변 이후 별도 의견서 추가하여 진행

3 교권 준칙 제정 준비

□ 제1차 교권 준칙 제정 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2026년 7월 14일(화) 16시-18시
- 장소: 온라인
- 참석자: 조혜영, 김민수, 송지환, 이경은, 장진호, 한갑수
- 논의 및 합의 내용

1. TF 구성 배경 및 목적 논의 및 합의

- 추천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안을 검토한 이후 의견 제시

① 의견 1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초·중등 교원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학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번 교권보호 준칙 마련을 계기로 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법」에서 대학 교수를 교원지위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각 대학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② 의견 2

교권보호 준칙은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그쳐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대학 현장에서 직접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함. 특히 신고, 조사, 피해교원 지원, 사후관리 등 실제 사건 발생 시 즉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입법 과정에서는 교수노동조합 등 유관 단체와의 협력도 필요함.

③ 의견 3

향후 대학 교원의 교권보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 차원의 기본적인 교권보호 선언과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법률 제정 이전이라도 각 대학이 학칙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면 교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이후 법률 개정의 근거와 명분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

④ 의견 4

외국 대학의 경우에도 법률보다는 대학 자체 규정이나 학칙을 근거로 교권보호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대학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우선 학칙과 준칙을 중심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 국공립대학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임.

⑤ 의견 5

현재 일부 대학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거나 운영 중인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전남대학교와 경북대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는 교수회 산하 조직으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면서 교수들이 외부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반면 상당수 대학은 인권센터를 활용하고 있으나, 인권센터는 교권 보호를 전담하기에는 기능과 역할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대학 교원의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교권보호기구 설치가 필요함.

2. TF 추진 목적(가안) 검토

: 위원장은, TF의 목적을 “국공립대학의 교육활동과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공립대학교 교권보호 준칙」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안함. 본 준칙은 대학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대학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설명함.

① 의견

대학 교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연구활동의 보호가 명확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음. 특히 연구윤리, 학문적 자율성, 대학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도 목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 논의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학 교권 관련 주요 현안이 있을 경우 이를 목적에 함께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논의 결과

TF의 세부 내용과 적용 범위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목적을 확정하기보다는, 준칙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일정 부분 마련한 이후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목적을 최종 보완·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음. 이에 따라 현재 제안된 목적(안)은 향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하기로 함.

3. 대학 교권침해 사례 공유 및 준칙 마련 방향 논의

① 사례 공유

최근 대학에서 발생한 다양한 교권침해 사례를 공유함. 주요 사례로는 ▲학생에 의한 폭행 ▲온라인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협박 ▲연구실 무단 난입 ▲스토킹 ▲반복적·악의적인 민원 제기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사례가

대학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위축시키고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데 의견을 같이함.

② 의견

- 「국공립대학교 교권보호 준칙」을 마련한 이후 국교련 차원에서 각 국공립대학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를 권고하여 대학별 교권 보호체계 구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준칙은 모든 상황을 포괄하려 하기보다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핵심 원칙과 절차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각 대학이 자체 실정에 맞게 세부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선언적 성격의 표준 매뉴얼 또는 기본 항목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법체계 내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고등교육법에 따른'이라는 표현을 명확히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현행 법령을 보완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임.
- 대학 교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를 대학 교원까지 확대하거나 관련 내용을 보완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음.

③ 논의 결과

TF는 대학 교권침해 사례를 반영한 표준 준칙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교련을 통해 각 대학의 교권보호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함. 또한 준칙은 대학별 자율성을 고려한 기본 원칙과 절차 중심으로 구성하고, 향후 「고등교육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완 필요성도 함께 건의하기로 함.

4. 준칙 구성에 따른 역할 분담[아래 표 참조]

- ① TF의 업무를 법·제도 개선 보고서 작성과 교권침해 대응매뉴얼 개발의 두 개 트랙으로 운영하기로 함.
- (1) 위원장과 「법·제도 및 기본원칙」 담당 위원은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보고서 작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교권 관련 법령 검토, 법적 근거 마련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정리함.
- (2) 「교권 침해 대응체계」, 「피해 교원 보호」, 「학생 조치 및 교육공동체 회복」, 「예방 및 제도개선」 담당 위원은 대학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권 보호 대응매뉴얼 작성을 중심으로 작성.
- (3) 각 담당 분야에서 작성한 결과물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이를 통합하여 「국공립대학교 교권보호 준칙」과 정책보고서로 완성하기로 함.

[역할 분담표]

직책	주요역할	주요산출물
조혜영 위원장	TF 운영 총괄 제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추진 일정 관리 회의 주재 쟁점 조정 최종 준칙 통합 대외 협의(국교련·국중련 등) 최종 보고서 작성	TF 운영계획 준칙 최종안 최종 보고서
장진호 위원	「법·제도 및 기본원칙」 담당 제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국공립대학 교권보호의 철학과 법적 근거 마련 ① 국내 법령 검토//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 법 국가공무원법 ② 관련 판례 조사 ③ 국내외 교권 개념 조사 ④ 교권의 정의 및 기본 원칙 작성 ⑤ 준칙 적용범위 작성	총칙 목적 정의 기본원칙
김민수 위원	「교권 침해 대응체계」 담당 사건 발생 시 대응 절차 ① 최근 대학 교권침해 사례 조사 ② 사례 유형화 예) 폭행 폭언 협박 스토킹 온라인 침해 ③ 대응절차 설계 및 신고 및 조사 절차 ④ 위기대응 Flow 작성	교권침해 유형 신고체계 대응매뉴얼 조사절차
송지환 위원	「피해 교원 보호」 담당 회복 지원체계 ① 국내 외 지원사례 조사 ② 피해교원 보호절차 ③ 심리, 의료, 법률, 복귀 지원	피해교원 지원 회복지원 복귀절차
한갑수 위원	「학생 조치 및 교육공동체 회복」 담당 학생 조치 및 갈등 해결 ① 학생징계규정 조사 ② 학생조치 유형 및 교육적 조치 ③ 갈등조정 및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④ 학생 예방교육	학생조치 징계연계 공동체 회복
이경은 위원	「예방 및 제도개선」 담당 예방 및 지속관리 ① 예방교육 조사 및 실태조사 방법 ② 모니터링 체계 및 사례관리 ③ 대학 간 협력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	예방교육 재발방지 모니터링 협력체계

5. 향후 추진 일정 : 7월 29일 24시까지 자료제출(단독방 업로드)

7월 31일 16시 (Zoom 회의)

1. 회원교 연회비 납부 현황

(2026. 2. 28. 기준, 단위:원)

연번	회원교명	분담액	납부액	미납액	비 고
1	서울대학교	8,260,000	7,600,000	660,000	
2	부산대학교	6,445,000	2,260,160	0	2024년 정산금
3	전남대학교	6,445,000	6,445,000	0	
4	전북대학교	6,445,000	6,445,000	0	
5	강원대학교	6,477,000	6,477,000	0	
6	충남대학교	4,477,000	4,477,000	0	
7	경상국립대학교	5,477,000	5,477,000	0	
8	충북대학교	5,477,000	5,477,000	0	
9	제주대학교	4,477,000	4,477,000	0	
10	부경대학교	5,477,000	5,477,000	0	
11	공주대학교	5,477,000	5,477,000	0	
12	인천대학교	3,267,000	3,267,000	0	
13	서울시립대학교	3,267,000	3,267,000	0	
14	강릉원주대학교	3,267,000	3,267,000	0	
1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267,000	3,267,000	0	
16	군산대학교	4,267,000	4,267,000	0	
17	창원대학교	3,267,000	1,306,800	1,960,200	교수회계 미납
18	순천대학교	3,267,000	3,267,000	0	
19	한국교통대학교	4,267,000	4,267,000	0	
20	목포대학교	3,267,000	3,267,000	0	
21	경국대학교	3,267,000	3,267,000	0	
22	한국해양대학교	3,267,000	3,267,000	0	
23	한밭대학교	3,267,000	3,267,000	0	
24	금오공과대학교	2,299,000	2,299,000	0	
25	한국교원대학교	3,299,000	3,299,000	0	
26	한경국립대학교	2,299,000	2,299,000	0	
2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299,000	2,299,000	0	
28	목포해양대학교	2,299,000	2,299,000	0	
29	한국체육대학교	2,299,000	2,299,000	0	
30	경인교육대학교	605,000	605,000	0	
31	대구교육대학교	605,000	605,000	0	
32	공주교육대학교	605,000	605,000	0	
33	부산교육대학교	605,000	605,000	0	
34	광주교육대학교	605,000	605,000	0	
35	춘천교육대학교	1,105,000	1,105,000	0	
36	진주교육대학교	605,000	605,000	0	
37	청주교육대학교	605,000	605,000	0	
38	전주교육대학교	605,000	605,000	0	
합 계		126,877,000	120,071,960	2,620,200	

*부산대학교는 2024년 4,184,840원 정산금을 제외하고 납부

2. 2025년도 국교련 결산 보고(2025. 3. 1. ~ 2026. 2. 28.)

가. 세입 예산

(단위: 원)

구분		당초 예산액*	실제 세입액	차액 (실제-당초)
대학 회계	전년도 이월금	19,986,720	19,986,720	0
	전년도 이월금(이자)		3,500	3,500
	2025 연회비(대학회계)	45,350,800	57,164,180	11,813,380
대학회계 소계(A)		65,337,520	77,154,400	11,816,880
교수 회비	전년도 이월금		399,801	399,801
	2025 연회비(교수회비)	68,026,200	55,907,780	-12,118,420
	2025 연회비(특별회비)	13,500,000	7,000,000	-6,500,000
	2025 이자(교수회비)		30,315	30,315
교수회비 소계(B)		81,526,200	63,337,896	-18,188,304
예산 총계(A+B)		146,863,720	140,492,296	-6,371,424

나. 세출 예산

2025년도 교수회비 세출 예산

(단위: 원)

예산과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집행액	잔액
항	목				
사업비	대외협력비	13,220,800	17,066,696	13,220,800	3,845,896
	정책과제 연구추진비	4,079,200	0	0	0
업무활동비	활동수당	24,000,000	24,000,000	24,000,000	0
	대외업무추진비	3,184,200	2,870,000	2,870,000	0
여비	여비	8,800,000	329,200	329,200	0
인건비	인건비	27,600,000	19,000,000	19,000,000	0
인쇄홍보비	인쇄비	300,000	30,000	30,000	0
	홍보비	300,000	0	0	0
일반관리비	잡비	42,000	42,000	4,400	37,600
계		81,526,200	63,337,896	59,454,400	3,883,496

2025년도 대학회계 세출 예산

예산과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집행액	잔액
목	세목				
운영비	일반수용비	10,837,520	15,838,000	5,564,700	10,273,300
	공공요금 및 제세	700,000	700,000	436,780	263,220
	운영수당	5,400,000	6,217,000	1,850,000	4,367,000
여비	국내여비	12,000,000	18,000,000	2,706,680	15,293,320
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34,000,000	34,000,000	20,139,600	13,860,400
	관서업무추진비	2,400,000	2,400,000	0	2,400,000
기타	예비비	0	0	0	0
계		65,337,520	77,155,000	30,697,760	46,457,240

다. 세출 상세 내역

2025년도 교수회비 세출 상세 내역

1. 대외업무추진비

지출일자	항목	지출내역	지출액(원)
2025.07.03	교수회비	포럼 회비	400,000
2025.07.03	교수회비	6월 특강	1,000,000
2025.07.24	교수회비	축하, 근조 화환 6건	613,000
2025.12.10	교수회비	교수 신문사 보도 협의	330,000
2026.01.07.~2.27	교수회비	축하 화환 3건	527,000
계			2,870,000

2. 대외협력비

지출일자	항목	지출내역	지출액(원)
2025.03.20.~04.10	교수회비	국회후생복지위(음료)	44,200
2025.04.25.~04.26	교수회비	4월 총회 행사 비용(2차 및 2일차)	537,860
2025.05.08.~5.20	교수회비	국회후생복지위	50,200
2025.05.20	교수회비	식사비 중화식당 다복	30,000
2025.05.26	교수회비	코레일유통, 국회 등	16,800
2025.06.23	교수회비	국회후생복지위 등	42,000
2025.06.27	교수회비	국교련 정책간담회-국회, 식당 등	170,400
2025.07.04	교수회비	국회 업무 협의-국회후생복지위 등	30,000
2025.07.15	교수회비	포럼 참석자 음료	18,500
2025.07.23	교수회비	업무 협의-외계인키친	13,300
2025.07.25	교수회비	6월 간담회 현수막 비용	99,000
2025.07.31	교수회비	7월 회장단 간담회	497,500
2025.08.13	교수회비	8월 총회 2차 비용 등	581,100
2025.08.14	교수회비	국회 간담회-만찬비용	283,000
2025.08.27	교수회비	국회 협의- 만찬 비용 등	113,500
2025.09.15	교수회비	포럼 참석-국회후생복지위	5,650
2025.09.15	교수회비	포럼 참석-티머니 개인택	8,200
2025.09.26	교수회비	9월 총회 2차 비용 등	312,000
2025.10.01	교수회비	교통비-한국철도공사	9,600
2025.10.02	교수회비	회장단 추석선물	2,150,000
2025.10.24	교수회비	10월 총회 2차 비용	299,500
2025.11.28	교수회비	11월 총회 비용	293,790
2025.12.22	교수회비	장관간담회 다과 비용-엠에스리테일	48,000
2025.12.31.	교수회비	고현철교수 기념사업회	3,600,000
2026.01.12.	교수회비	업무 협의	88,000
2026.01.22.~24.	교수회비	선거 비용 및 2차 비용	688,700
2026.02.03.~02.26.	교수회비	1월 현수막, 책자, 간담회, 다과비 등	827,000
2026.02.25.~02.26.	교수회비	인계물품 발송, 업무 간담회	928,000
2026.02.27.~02.28.	교수회비	업무간담회 등	1,435,000
계			13,220,800

3. 업무활동비

지출일자	항목	지출내역	지출액(원)
2025.04.27	교수회비	3월,4월 활동수당(상임회장,정책위원장, 사무총장)	4,000,000
2025.05.16	교수회비	5월 활동수당(상임회장,정책위원장, 사무총장)	2,000,000
2025.07.01	교수회비	6월 활동수당(상임회장,정책위원장, 사무총장)	2,000,000
2025.07.17	교수회비	7월 활동수당(상임회장,정책위원장, 사무총장)	2,000,000
2025.08.18	교수회비	8월 활동수당(상임회장,정책위원장, 사무총장)	2,000,000
2025.09.17	교수회비	9월 활동수당(상임회장,정책위원장, 사무총장)	2,000,000
2025.10.17	교수회비	10월 활동수당(상임회장,정책위원장, 사무총장)	2,000,000
2025.11.17	교수회비	11월 활동수당(상임회장,정책위원장, 사무총장)	2,000,000
2025.12.17	교수회비	12월 활동수당(상임회장,정책위원장, 사무총장)	2,000,000
2026.01.19.	교수회비	1월 활동수당(상임회장,정책위원장, 사무총장)	2,000,000
2026.02.06.	교수회비	2월 활동수당(상임회장,정책위원장, 사무총장)	2,000,000
계			24,000,000

4. 여비

지출일자	항목	지출내역	지출액(원)
2025.07.04	교수회비	자문위원장여비	329,200

5. 인건비

지출일자	항목	지출내역	지출액(원)
2025.05.16	교수회비	3-5월 전문위원, 간사	6,900,000
2025.07.01	교수회비	6월 전문위원, 간사	2,300,000
2025.07.17	교수회비	7월 전문위원, 간사	2,300,000
2025.08.18	교수회비	8월 전문위원, 간사	2,300,000
2025.09.17	교수회비	9월 전문위원, 간사	2,300,000
2025.10.17	교수회비	10월 전문위원, 간사	2,300,000
2025.11.17	교수회비	11월 간사	300,000
2025.12.17	교수회비	12월 간사	300,000
계			19,000,000

6. 인쇄비

지출일자	항목	지출내역	지출액(원)
2025.04.27	교수회비	정책위원장 명함 비용	30,000

7. 잡비

지출일자	항목	지출내역	지출액(원)
2025.04.11	교수회비	공동인증수수료	4,400

2025년도 대학회계 세출 상세 내역

1. 공공요금

지출일자	항목	지출내역	지출액(원)
2025.05.09	대학회계	홈페이지유지보수(3,4월)	60,000
2025.07.16	대학회계	홈페이지유지보수(5,6월)	60,000
2025.08.11	대학회계	8월 총회 자료집 택배비	6,000
2025.08.20	대학회계	홈페이지유지보수(7,8월)	60,000
2025.09.24	대학회계	9월 총회 자료집 택배비	5,000
2025.09.24	대학회계	도메인 연장 비용	65,780
2025.11.17	대학회계	홈페이지유지보수(9,10월)	60,000
2026.01.09.	대학회계	홈페이지유지보수(9,10월)	60,000
2026.02.26.	대학회계	홈페이지유지보수(9,10월)	60,000
계			436,780

2.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지출일자	항목	지출내역	지출액(원)
2025.03.19	대학회계	3월 총회 행사 비용	220,000
2025.03.21	대학회계	3월 총회 행사 비용	66,000
2025.04.10	대학회계	국회 업무 협의	105,000
2025.04.26	대학회계	4월 총회 숙소 비용	1,235,000
2025.05.08	대학회계	국회 업무 협의	198,000
2025.05.13.	대학회계	대선공약 전달식 및 간담회	759,000
2025.05.20.	대학회계	대선공약 전달식 및 간담회	507,000
2025.06.23.	대학회계	국교련 현안 업무 간담회	28,000
2025.06.27.	대학회계	국교련 정책 간담회	504,000
2025.07.30	대학회계	7월 회장단 간담회	291,400
2025.08.13	대학회계	8월 총회 숙소 비용	1,560,000
2025.08.14	대학회계	8월 총회 조식 비용	555,000
2025.08.22	대학회계	8월 총회 다과 비용	206,590
2025.09.27	대학회계	9월 총회 조식 비용	80,000
2025.09.29	대학회계	9월 총회 숙소 비용	910,000
2025.10.01	대학회계	9월 총회 다과 비용	121,010
2025.10.24	대학회계	10월 총회 숙소비용	1,360,000
2025.10.31	대학회계	10월 총회 다과비용	146,600
2025.12.01	대학회계	11월 총회 숙소비용	1,360,000
2025.12.01	대학회계	11월 총회 다과비용	119,000
2026.01.12.	대학회계	국교련 현안업무간담회	342,000
2026.01.20.	대학회계	국교련 현안업무간담회	490,000
2026.01.27.	대학회계	1월 숙소	3,606,000
2026.02.23.	대학회계	국교련 선물 지급	5,370,000
계			20,139,600

3. 여비

지출일자	항목	지출내역	지출액(원)
2025.05.19	대학회계	출장비용-정책위원장여비	294,820
2025.05.19	대학회계	출장비용-사무총장여비	660,330
2025.05.28	대학회계	0520 사무총장여비	110,460
2025.05.28	대학회계	0520 정책위원장여비	89,060
2025.07.02	대학회계	0627 정책위원장여비	89,060
2025.07.02	대학회계	0627 사무총장여비	110,460
2025.07.30	대학회계	0724 정책위원장여비	90,900
2025.08.04	대학회계	0724 사무총장여비	72,700
2025.08.21	대학회계	0813 사무총장여비	165,700
2025.08.21	대학회계	0813 정책위원장여비	116,200
2025.09.17	대학회계	0915 사무총장여비	69,460
2025.10.02	대학회계	0926 사무총장여비	97,960
2025.10.02	대학회계	0926 정책위원장여비	97,460
2025.10.29	대학회계	1024 정책위원장여비	64,200
2025.10.29	대학회계	1024 사무총장여비	117,100
2025.12.10	대학회계	1128 사무총장여비	76,400
2025.12.31	대학회계	1222 사무총장여비	72,850
2026.01.28.	대학회계	0123 사무총장여비	193,600
2026.01.28.	대학회계	0123 정책위원장여비	117,960
계			2,706,680

4. 운영수당

지출일자	항목	지출내역	지출액(원)
2025.04.27	대학회계	3월 세미나 발표자 수당	550,000
2025.04.27	대학회계	3월 세미나 토론자 수당	300,000
2025.04.28	대학회계	3월 세미나 발표자 수당	550,000
2025.04.28	대학회계	3월 세미나 토론자 수당	300,000
2025.04.28	대학회계	3월 세미나 사회자 수당	150,000
계			1,850,000

5. 일반수용비

지출일자	항목	지출내역	지출액(원)
2025.04.02	대학회계	3월 총회 행사 비용	4,029,000
2025.05.08	대학회계	국교련 상장 케이스 제작	425,700
2025.07.26	대학회계	군산대학교 현수막 제작	264,000
2025.09.29	대학회계	9월 총회 현수막 제작	356,000
2025.10.31	대학회계	10월 총회 현수막 제작	205,000
2025.10.31	대학회계	10월 총회 회의자료 제본	120,000
2025.12.01	대학회계	11월 총회 현수막 제작	165,000
계			5,564,700

제28대 국교련 감사보고서 (2025 회계연도 감사)

감사 2인은 제28대 국교련 사무국으로부터 「제28대 국교련 결산보고서」와 이를 증빙하는 자료(세출예산 집행 관련 증빙자료 및 상임회장 출장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제출된 「제28대 국교련 결산보고서」는 ① 회원교 연회비 납부 현황, ② 2025년도 대학회 계 및 교수회비 회계의 세입예산(당초·실제)과 세출예산(당초·변경·집행), ③ 세출 상세내역 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감사 2인은 세출예산 집행 상세내역이 제출된 증빙자료와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 2인은 제28대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대학회계 세입은 예산보다 많고 교수회비 회계 세입은 예산보다 적었는데, 이는 일부 대 학의 경우 교수회비 회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대학본부의 지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으 며, 또 일부 대학은 교수회비 수입이 대학회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 교수회비 회계로 납부되어야 할 금액이 대학회계로 납부되었기 때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대학회계 세출예산의 실제 집행액이 당초예산보다 크게 적었는데, 이는 전임 집행부가 ①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고자 하였고, ② 회원회계에서 집행 이 가능한 항목은 대학회계에서 집행하기 어려웠으며, ③ 일부 예산이 미집행되었기 때 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2인은 제28대 집행부의 미처리 예산 9,279,940원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 였습니다. 이에 제29대 사무국에서는 해당 예산을 회원회계와 대학회계로 구분하여 집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28대 집행부 미처리 예산>

- 1) 전문위원 인건비 11~2월 1,000,000원/월 총 4,000,000원 (회원회계)
- 2) 회계 인건비 1~2월 300,000원/월 총 600,000원 (회원회계)
- 3) 백서 제작비 2,540,000원 (대학회계)
- 4) 상임회장 출장비 총 2,139,940원 (대학회계)

2026. 7. 20.

감사 한국체육대학교 교수회장 안성환



감사 충남대학교 교수회장 정세은



 기타 안전

Ⅲ. 첨 부 자 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정관

제1조(명칭) 본회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약칭 “국교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국·공립대학 교수(협의)회가 연대하여 대학의 민주화와 대학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교육, 연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공립대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는 전국의 국·공립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한다. 다만, 국·공립대학 간 통합으로 법적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본회의 회원이었던 교수(협의)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4조(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상임회장교에 둔다.

제5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1월과 3월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상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5인 이상의 회원교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의 요청이 있을 때 상임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는 서면위임을 포함한 회원교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⑤ 총회는 출석 회장(의장)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원교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은 불참시 총회에서의 권한행사를 소속대학의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회원교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의 2/3 이상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서면 결의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 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에는 재적 회원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6조(상임회장 및 공동회장단) ① 본회에는 상임회장 1인을 둔다.

② 본회에는 10인 이내의 공동회장을 두되,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과 국가중심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2. 상임회장이 추천하는 3인
3.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이 추천하는 2인
4. 국가중심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이 추천하는 2인
5. 교육대학(교원대 포함) 교수회 상임회장이 추천하는 1인

6. 회장단회의(정기총회, 임시총회 포함)에서 추천하는 약간 명

제7조(상임회장 및 공동회장단의 선출) ① 각 회원교의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위임받아 출석한 대리인은 선거권만을 가진다.

② 상임회장은 소속대학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회원교 교수(협의)회 회장(의장) 중에서 1월 정기총회일에 선출한다.

③ 제6조 제2항의 공동회장은 상임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상임회장의 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모든 회원교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이 각 1표씩 가진다. 다만, 개별 회원교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이 행사하는 1표의 실제 투표가치는 개별 대학의 교원수를 감안하여 산정한 붙임 1의 보정가치를 따른다.

⑤ 상임회장 선출을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상임회장 및 공동회장의 임기) ① 상임회장과 공동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상임회장이 상임회장의 직을 사퇴하거나, 유고의 사유 등으로 공석이 된 경우에 그 잔여임기가 3개월 이상이면 임시총회에서 재선출한다.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이면 공동회장단이 협의하여 결정한 공동회장 중 1인이 상임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공동회장이 공석이 된 경우에는 제7조 제3항에 의해 선정된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다.

④ 재선출된 상임회장과 공동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상임회장 및 공동회장의 직무) ① 상임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처리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② 공동회장은 본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며, 처리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감사) ① 본회에는 감사 2인을 두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퇴나 기타 사유로 공석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8조 제2항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사무처) ① 본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 전문위원 및 간사 약간 명을 둔다.

③ 사무총장은 상임회장이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며, 상임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④ 전문위원과 간사는 상임회장이 임명하며, 상임회장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12조(고문, 자문위원) 상임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전임 상임회장 중 약간 명을 고문으로, 회원교 전임 교수(협의)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중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정책위원회) ① 본 회의 정책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회장을 보좌하는 정책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상임위원회, 전문위원회) 본회에 총회의 결정으로 상임회장을 보좌하는 상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회장(의장)단 회의) ① 회장단 회의는 상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장단 구성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상임회장이 소집한다.

② 상임회장은 회장단 회의의 의장을, 사무총장은 회장단 회의의 서기를 겸한다.

③ 회의는 회장단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회장단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무총장, 감사, 고문 및 자문위원, 정책위원(장), 전문위원, 회원교 교수(협의)회 임원은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회장단 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안건
2. 상임회장이나 회장단 구성원 1/3 이상이 회의에 상정한 안건
3. 회장단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재정) ① 회원교는 총회에서 정하는 일정액의 연회비와 사업에 따른 분납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7조(회원자격의 정지)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연속으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일반 관례)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19조(개정) 이 회칙은 총회에서 회원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회칙은 1994년 04월 01일 총회에서 제정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1997년 04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1999년 04월 0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00년 03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02년 02월 0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04년 04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05년 03월 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05년 04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07년 04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08년 03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09년 04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0년 02월 0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1년 04월 0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2년 02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6년 03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6년 09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7년 03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7년 08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22년 01월 0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22년 03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24년 03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25년 04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2026년 03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제29대 국교련 임원 현황 및 회의 일정

□ 임원 명단

구분	직 책	성 명	소속대학	연락처
상임위원회	상임회장	한상욱	전북대학교	010-9539-7775
	상임위원	임정묵	서울대학교	010-3111-9111
	상임위원	조혜영	국립군산대학교	010-7541-7958
사무처	사무총장	정석호	국립부경대학교	010-6346-9498
	간사	공하영	전북대학교	010-9651-7679
공동회장단	공동회장	임정묵	서울대학교	010-3111-9111
	공동회장	조혜영	국립군산대학교	010-7541-7958
	공동회장	김선형	서울시립대학교	010-4554-3368
	공동회장	송지환	전주교육대학교	010-8645-4326
	공동회장	이경은	경북대학교	010-4527-1402
	공동회장	이용재	부산대학교	010-6525-2118
	공동회장	이을규	한경국립대학교	010-2762-5274
	공동회장	장진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010-2434-970
	공동회장	정세은	충남대학교	010-8330-3348
	공동회장	정수연	제주대학교	010-2944-8021
정책위원회	정책위원장	최인호	충남대학교	010-9406-4719
	정책위원	김재관	전남대학교	010-3367-2088
	정책위원	박상식	경상국립대학교	010-7545-7098
	정책위원	손영진	국립순천대학교	010-4094-6216
	정책위원	이용기	한국교원대학교	010-6315-8785
	정책위원	박종원	국립부경대학교	010-4130-8773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박종진	충북대학교	010-2505-0533
	자문위원	송기춘	전북대학교	010-9881-5466
	자문위원	이형철	경북대학교	010-5432-3491
	자문위원	장진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010-2434-970
감사	감 사	김민수	전남대학교	010-8601-2057
	감 사	박세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010-6213-3370

□ 회의 일정 및 개최교

총회/회장단 회의	일시	개최교
임시총회	2026.03.27. ~ 03.28.	전북대학교
1차 회의	2026.04.24. ~ 04.25.	충남대학교
2차 회의	2026.05.29. ~ 05.30.	서울대학교
3차 회의	2026.06.19. ~ 06.20.	국립부경대학교
4차 회의	2026.07.24. ~ 07.25.	국립경국대학교
5차 회의	2026.08.13. ~ 08.14.	부산대학교
6차 회의	2026.09.18. ~ 09.19.	국립군산대학교
7차 회의	2026.10.16. ~ 10.17.	경상국립대학교
8차 회의	2026.11.27. ~ 11.28.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기총회	2027.01.29. ~ 01.30.	경북대학교

3 회원교 연락처(2026.3.현재)

	대학	직책	성명	전공학과	연구실	휴대전화	이메일	임기
1	강원대학교 교수회	회장	우홍명	수의학과	033-250-8651	010-7208-2251	woohm@kangwon.ac.kr	2026.3.1 ~ 2028.2.29
		춘천캠퍼스 교수회장	최익영	스마트팜농산업학과	033-250-7768	010-6828-0301	choii@kangwon.ac.kr	
		강릉캠퍼스 교수회장	한갑수	환경조경학과	033-640-2477	010-9706-2556	hangs@kangwon.ac.kr	
		삼척캠퍼스 교수회장	남기택	자유전공학부	033-570-6617	010-7277-0696	litoem@kangwon.ac.kr	
		원주캠퍼스 교수회장	최상일	컴퓨터공학과	033-760-8670	010-3659-7452	sangil.choi@kangwon.ac.kr	
		정책위원장	이승환	목재종이과학부	033-250-8323	010-7174-6240	lshyhk@kangwon.ac.kr	
		사무처장	서영호	기계융합공학과	033-250-6378	010-6408-0430	mems@kangwon.ac.kr	
		여교수회장	박정애	영상문화학과	033-250-8762	010-2493-2009	fairlove@kangwon.ac.kr	
		■ 사무실 : 이메일 professsion@kangwon.ac.kr / 전화 033-250-7328 / 팩스 033-259-5502 / 담당자 최명환 ■ 주소 : (2434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대학본부 509호 교수회						
2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교수회	회장	한갑수	환경조경학과	033-640-2477	010-9706-2556	hangs@kangwon.ac.kr	2026.03.01 ~ 2028.02.29
		부회장	박성욱	전자·반도체공학과	033-640-2388	010-8569-6963	swpark09@kangwon.ac.kr	
		사무처장	최용철	체육학과	033-640-2558	010-8791-8299	ycchoi@kangwon.ac.kr	
		■ 사무실 : 이메일 gwnupa@gwnu.ac.kr / 전화 033-640-2749 ■ 주소 : (2545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죽전길 7 국립강릉원주대학교 C5 229호 교수회						
3	경북대학교	의장	이정은	사회복지학부	053-950-7167	010-4527-1402	keung@knu.ac.kr	2026.3.1 ~ 2028.2.29
		부의장	이정은	의학과	053-950-5016	010-9966-5791	jelee@knu.ac.kr	
		부의장	성중탁	법학과	053-950-5016	010-7472-6887	jtsung@knu.ac.kr	
		부의장	이기하	건설방재공학과	053-950-5016	010-4057-5302	leegiha@knu.ac.kr	
		사무처장	정영훈	식품공학과	053-950-5016	010-8715-0211	younghoonjung@knu.ac.kr	
		■ 사무실 : 이메일 prfa@knu.ac.kr / 전화 053-950-5015 / 팩스 053-959-5266 / 담당자 배원미 ■ 주소 :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북지관 3층 교수회						
4	경상국립대학교 교수회	회장	박상식	해양경찰시스템학과	055-772-9182	010-7545-7098	sangsik@gnu.ac.kr	2025.9.1 ~ 2027.8.31
		수석부회장(가좌)	안용태	에너지공학과	055-772-3882	010-9911-6842	ytahn@gnu.ac.kr	
		부회장(통영)	김무찬	해양환경공학과	055- 772-9135	010-2586-0940	kmc81@gnu.ac.kr	
		부회장(칠암)	조운진	디자인비즈니스학과	055- 772-3376	010-3896-9990	ycho@gnu.ac.kr	
		부회장(의,간호대)	박기수	의학과(예방의학교실)	055-772-8095	010-4199-7068	parkks@gnu.ac.kr	
		부회장(여성협의회)	이정민	사학과	055-772-1083	010-9223-2615	poohcrescentia@hanmail.net	
		정책국장	김진섭	토목공학과	055-772-1791	010-4595-7054	jinsup.kim@gnu.ac.kr	
		사무국장	김원종	산업경영학과	055-772-1517	010-6666-3501	wj.kim@gnu.ac.kr	
		■ 사무실 : 이메일 faculty@gnu.ac.kr / 전화 055-772-0051 / 팩스 055-772-0053 / 담당자 신영선 010-8593-3961 ■ 주소 : (5282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국립대학교 본부 507호 교수회 사무실						
5	경인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김재호	생활과학교육	032-540-1287	010-3926-4326	oldmoon33@ginue.ac.kr	2025.3.1 ~ 2027.2.28
		부회장	안금희	미술교육	031-470-6275	010-5297-4367	khahn@ginue.ac.kr	
		부회장	윤성준	체육교육	031-470-6256	010-9178-3430	yun-111-@ginue.ac.kr	
		사무총무	박지훈	과학교육	032-540-1245	010-2312-6980	parkchem@ginue.ac.kr	
		편집총무	박미미	수학교육	032-540-1238	010-4108-1793	mpark@ginue.ac.kr	
		■ 사무실 : 이메일 oldmoon33@ginue.ac.kr / 전화 010-2312-6980 / 담당자 박지훈 ■ 주소 : (2104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62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예지관 609호 김재호 교수 연구실						
6	공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김창현		041-850-1620	010-2973-3432	bbhero@gjue.ac.k	2026.4.1 ~ 2028.3.31
		총무	김병연		041-850-1611	010-8853-3173	veritasedu@gjue.ac.kr	
		■ 사무실 : 이메일 profcoun@gjue.ac.kr / 전화 041-850-1620 / 팩스 041-850-1586 / 담당자 최영희(조교) ■ 주소 : (32553)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7 공주교육대학교 입지관 510호 국어교육과						
7	광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류시현	사회과교육과	062-520-4130	010-7125-7261	ryush@gnue.ac.kr	2026.5.29 ~ 2028.5.28
		부회장	서수현	국어교육과	062-520-4123	010-9041-3535	seosoo@gnue.ac.kr	
		사무총장	윤관기	음악교육학	062-520-4174	010-6776-6338	erinyes@gnue.ac.kr	
		■ 사무실 : 이메일 yoojy@gnue.ac.kr / 전화 062-520-4138 / 팩스 062-520-4137 / 담당자 유지연 ■ 주소 : (61204)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55 광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8	국립경국대학교 교수회	회장	임채창	경영학부	054-820-6801	010-6479-7025	imcee@gknu.ac.kr	2026.3.1 ~ 2028.2.1
		부회장	이재경	사회복지상담학부	054-820-5486	010-6251-0424	jkl@gknu.ac.kr	
		사무국장	한창완	모빌리티디자인공학과	054-650-0291	010-4124-8861	hwchangwan@gknu.ac.kr	
		정책국장	이채영	패션·예술·체육학부	054-820-5497	010-7205-0858	chaiyounglee@gknu.ac.kr	
		■ 사무실 : 이메일 faculty@gknu.ac.kr / 전화 054-820-7201 / 팩스 054-820-7202 / 담당자 권소영 ■ 주소 : (36729)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1375 국립경국대학교 정보통신원 4층 404호 교수회						
9	국립공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박지훈	지리교육	041-850-8245	010-8420-7634	pollenpih@kongju.ac.kr	2024.9.1 ~ 2026.8.31
		부회장	이기형	교양학부	041-856-8667	010-4757-6686	howard@kongju.ac.kr	
		부회장	이수형	산림과학과	041-330-1301	010-2651-9008	eosh@kongju.ac.kr	
		부회장	이정윤	디자인컨버전스학과	041-521-9406	010-3830-7355	jeong86@kongju.ac.kr	
		부회장	노해신	도자문화융합디자인학과	041-850-0374	010-6404-8816	hsro@kongju.ac.kr	
		사무국장	정형근	교양학부	041-850-8666	010-3389-2030	bear-9030@kongju.ac.kr	
		■ 사무실 : 이메일 prof@kongju.ac.kr / 전화 041-850-8760 / 팩스 041-850-8761 / 담당자 윤호영 ■ 주소 : (32588)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관 203호 교수회 사무국						

10	국립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조혜영	간호학부	063-469-1989	010-7541-7958	elfish80@kunsan.ac.kr	2026.3.25 ~ 2028.3.24
		상임부의장	심종표	화학공학과	063-469-4478	010-8744-6440	jpshim@kunsan.ac.kr	
		사무처장	양우영	무예학과	063-469-4505	010-5106-9055	wyyang@kunsan.ac.kr	
		간사	최명진	토목공학과(조교)	063-469-7339	010-4918-5870	401862@kunsan.ac.kr	
		■ 사무실 : 이메일 faculty@kunsan.ac.kr / 전화 063-469-7339 / 담당자 최명진 ■ 주소 : (54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558 국립군산대학교 해양대1호관 3층 701315호 교수평의회						
11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교수회	회장	장진호	섬유공학	054-478-7715	010-2434-9706	jh.jang@kumoh.ac.kr	2025.3.1 ~ 2027.2.28
		부회장	서영진	기계공학	054-478-7302	010-5597-5401	yjseo@kumoh.ac.kr	
		사무국장	최시혁	기계공학	054-478-7291	010-4598-5325	sh.choi@kumoh.ac.kr	
		감사	정연구	환경공학	054-478-7631	010-6486-7631	jeongyk@kumoh.ac.kr	
		감사	이용환	재무관리	054-478-7845	010-4948-8788	leeyh@kumoh.ac.kr	
■ 사무실 : 이메일 prof@kumoh.ac.kr / 전화 054-478-6963 / 팩스 054-478-6964 / 담당자 김민아 ■ 주소 : (39177)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글로벌관 601호 교수회								
12	국립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강일국	교육학과	061-450-2174	010-7274-2174	ilguk@mnu.ac.kr	2026.6.1 ~ 2028.5.31
		부의장	김현중	식품공학전공	061-450-2423	010-7769-7415	ritwvhjk@mnu.ac.kr	
		사무처장	김필곤	환경교육과	061-450-2784	010-5168-0233	pilgonkim@mnu.ac.kr	
		편집위원장	신지수	음악공연기획과	061-450-6053	010-4120-9842	jehenisus@mnu.ac.kr	
		■ 사무실 : 이메일 pyung@mokpo.ac.kr / 전화 061-450-2961 / 팩스 061-450-2974 / 담당자 구지영 ■ 주소 : (58554) 전라남도 무안군 영산로 1666 국립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						
13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정종면	컴퓨터공학과	061-240-7263	010-3765-7263	jmjeong@mmu.ac.kr	2026.4.1 ~ 2028.3.31
		부의장	정창현	항해학부	061-240-7182	010-2054-7465	hyon@mmu.ac.kr	
		사무처장	최정식	해양경찰학부	061-240-7236	010-8883-6707	jungsikchoi@mmu.ac.kr	
		■ 사무실 : 이메일 proforg@mmu.ac.kr / 전화 061-240-7052(취업실습본부) / 담당자 구지영 ■ 주소 : (58628)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대학본부 4층 교수평의회실						
14	국립부경대학교 교수회	회장	류지열	정보통신공학전공	051-629-6239	010-3153-2740	ryujy@pknu.ac.kr	2026.3.1 ~ 2028.2.29
		부회장	윤민	응용수학과	051-629-5522	010-2753-8707	myoon@pknu.ac.kr	
		총무이사	강경미	국제협력연구소	051-629-6878	010-9347-0628	kangkm@pknu.ac.kr	
		교학이사	임석원	해양경찰학전공	051-629-5896	010-4716-3406	winterprey@pknu.ac.kr	
		기획이사	박상홍	전자공학전공	051-629-6224	010-6570-4643	radar@pknu.ac.kr	
■ 사무실 : 이메일 faculty@pknu.ac.kr / 전화 051-629-7321 / 담당자 정영숙 ■ 주소 : (48513)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국립부경대학교 대학본부 605호 교수회 사무실								
15	국립순천대학교 교수회	의장	손영진	약학과	061-750-3755	010-4094-6216	sony@scnu.ac.kr	2024.12.12 ~ 2026.12.11
		상임부의장	조대형	경제학과	061-750-3465	010-3007-8814	dhcho@scnu.ac.kr	
		당연직부의장	이정은	사학과	061-750-3478	010-4652-6852	karenin012@scnu.ac.kr	
		사무처장	김준호	건축학부	061-750-3526	010-9506-8026	archijune@scnu.ac.kr	
		■ 사무실 : 이메일 faculty@scnu.ac.kr / 전화 061-750-3993 / 팩스 061-750-3998 / 담당자 권현정 ■ 주소 : (57922)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국립순천대학교 대학본부 6층 602호 교수회						
16	국립창원대학교 교수회	의장	이장희	법학과	055-213-3211	010-3749-3417	racine@changwon.ac.kr	2026.4.1 ~ 2028.3.31
		부의장	신동규	사학과	055-213-3161	010-2423-4186	shindongkyu@changwon.ac.kr	
		부의장	박홍규	전자공학과	055-213-3656	010-9822-2232	hgpark@changwon.ac.kr	
		사무국장	이재민	법학과	055-213-3214	010-5064-1471	a1531@changwon.ac.kr	
		■ 사무실 : 이메일 kyoosu@changwon.ac.kr / 전화 055-213-4705 / 팩스 055-213-4709 / 담당자 이현정 ■ 주소 : (5114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국립창원대학교 대학본부 2층 1212호 교수회						
17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회	회장	남중웅	스포츠사회철학	043-849-1512	010-4533-0189	jwnam@ut.ac.kr	2026.3.1 ~ 2028.2.29
		부회장	전재호	행정정보융합전공	043-841-5874	010-8842-2413	jhjuhn@ut.ac.kr	
		정책국장	김영운	산업디자인학과	043-841-5738	010-2291-1709	yykim@ut.ac.kr	
		기획국장	유병태	안전공학과	043-841-5738	010-7531-2007	yykim@ut.ac.kr	
		교무학생상임위원장	이기백	화공생물공학전공	043-841-5230	010-7403-5230	glee@ut.ac.kr	
기획연구상임위원장 최순섭 건축공학전공 043-841-5842 010-3794-8842 sschoi@ut.ac.kr 재정복지상임위원장 김진배 자동차공학전공 043-841-5282 010-5257-7837 jeongbae_kim@ut.ac.kr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노 자동차공학전공 043-841-5285 010-5438-3381 klee@ut.ac.kr 사무처장 유정호 반도체신소재공학전공 043-841-5384 010-3643-3466 jhryu@ut.ac.kr								
■ 사무실 : 이메일 utpa@ut.ac.kr / 전화 043-841-5048 / 팩스 043-841-5049 / 담당자 임류아 010-4526-2073 ■ 주소 : (27469) 충청북도 충주시 대학로 50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대학본부 806호 교수회								
18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회	회장	박찬근	전자전기정보공학부	051-410-4372	010-9598-0680	chapark@kmou.ac.kr	2025.3.1 ~ 2027.2.28
		부회장	이상득	기관시스템공학부	051-410-4740	010-4011-5142	sdlee@kmou.ac.kr	
		사무처장	성주현	해사인공지능보안학부	051-410-5031	010-4550-9143	jhseong@kmou.ac.kr	
		■ 사무실 : 이메일 kyohyup@kmou.ac.kr / 전화 051-410-4200 / 팩스 051-404-3982 / 담당자 정유진 ■ 주소 :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회						
19	국립한밭대학교 교수회	회장	이원일	융합경영학과	042-821-1293	010-5501-7601	tech201@hanbat.ac.kr	2026.4.23 ~ 2027.5.27
		부회장	권기정	회계세무학과	042-821-1337	010-9544-6817	geejeung@hanbat.ac.kr	
		부회장	최창범	컴퓨터공학과	042-821-1144	010-2735-5723	cbchoi@hanbat.ac.kr	
		사무처장	신웅철	일본어과	042-821-1351	010-4389-5949	shinwngchl@hanbat.ac.kr	
		정책국장	서준석	자율전공학부	042-828-8545	010-4178-0353	junseok@hanbat.ac.kr	
■ 사무실 : 이메일 kyopyung@hanbat.ac.kr / 전화 042-821-1466 / 팩스 042-821-1895 / 담당자 박영숙 ■ 주소 : (3415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125 국립한밭대학교 대학본부(N1동) 106호 교수회								
20	대구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백중열	미술교육과	053-620-1385	010-3939-2490	bjartist@dnue.ac.kr	2026.5.18 ~ 2027.5.18
		부회장	박창균	국어교육과	053-620-1318	010-3276-0650	edukorean@dnue.ac.kr	
		부회장	임지은	교육학과	053-620-1406	010-8340-9171	jieun.lim@dnue.ac.kr	
		■ 사무실 : 이메일 rinaduna@dnue.ac.kr / 전화 053-620-1380 / 팩스 053-620-1528 / 담당자 김리나 ■ 주소 : (42411)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9 대구교육대학교 상록예술관 203호						

21	부 산 교 육 대 학 교 교 수 협 의 회	회장	김용민	사회교육	051-500-7224	010-3673-2261	kymin@bnue.ac.kr	2025.1.1 ~ 2027.12.31
		부회장	안태용	초등특수·유아교육	051-500-7306	010-3360-9330	ixdv2014@bnue.ac.k	
		총무	배화순	사회교육	051-500-7227	010-9859-5249	bhs1221@bnue.ac.kr	
		■ 사무실 : 이메일 kymin@bnue.ac.kr / 전화 051-500-7224 / 팩스 051-500-7221 / 담당자 김용민 ■ 주소 : (47503)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부산교육대학교 교수연구관 1층 교수협의회 사무실						
22	부 산 대 학 교 교 수 회	회장	이용재	문헌정보학과	051-510-2118	010-6525-2118	lyj5384@pusan.ac.kr	2025.3.1 ~ 2027.2.28
		수석부회장	계승균	융합학부	051-510-1046	010-9320-4680	doktorkye@pusan.ac.kr	
		부회장	차윤정	교양교육원	051-510-7426	010-4583-7336	greencha@pusan.ac.kr	
		부회장	유학선	의학과	051-510-8022	010-6502-0297	hsyu@pusan.ac.kr	
		사무총장	김중수	국어교육과	051-510-2603	010-8711-3317	so@pusan.ac.kr	
		재정위원장	김동일	경영학과	051-510-2581	010-4849-9200	kdi50@pusan.ac.kr	
		기획홍보위원장	권강	한의학과	051-510-5941	010-2365-0035	hanny98@pusan.ac.kr	
		■ 사무실 : 이메일 facultycouncil@pusan.ac.kr / 전화 051-510-1224-5 / 팩스 051-515-2236 / 담당자 이민희 ■ 주소 : (46241) 부산광역시 급정구 부산대학교로63번길 2 부산대학교 교수회관 2층						
23	서 울 과 학 기 술 대 학 교 교 수 평 의 회	의장	박세혁	스포츠학과	02-970-6297	010-6213-3370	parkse@seoultech.ac.kr	2025.3.1 ~ 2027.2.28
		부의장	김정수	인문사회교양학부	02-970-6272	010-2722-5595	sungsookim@seoultech.ac.kr	
		부의장	김민경	건축학부	02-970-6554	010-2606-6558	mkkim@seoultech.ac.kr	
		사무처장	신일훈	전자공학과	02-970-6420	010-2825-9908	ilhoon.shin@seoultech.ac.kr	
■ 사무실 : 이메일 Prof_council@seoultech.ac.kr 또는 hyeseon@seoultech.ac.kr / 전화 02-970-6907 / 담당자 이혜선 ■ 주소 : (018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본부 501호								
24	서 울 대 학 교 교 수 회	회장	임정목	인문대학	02-880-4806	010-3111-9111	limjm@snu.ac.kr	2025.4.1 ~ 2028.3.31
		부회장	임호준	농업생명과학대학	02-880-4096	010-2393-1841	hojoon33@snu.ac.kr	
		총무이사	노민수	약학대학	02-880-2481	010-3030-0759	minsoonoh@snu.ac.kr	
		■ 사무실 : 이메일 faculty@snu.ac.kr 또는 kynam@snu.ac.kr / 전화 02-880-5195 / 담당자 김영남 ■ 주소 :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행정관(60동) 2층 교수회						
25	서 울 시 립 교 대 학 교 교 수 회	회장	김선형	환경원예학과	02-6490-2689	010-4554-3368	pgel2006@gmail.com	2024.9.1 ~ 2026.8.31
		부회장	최호식	도시빅데이터융합학과	02-6490-5081	010-4541-4609	choi.hosik@uos.ac.kr	
		부회장	김아연	조경학과	02-6490-2845	010-8822-7206	ahyeonkim@uos.ac.kr	
		사무총장	김완태	생명과학과	02-6490-2669	010-8990-7359	wantaekim@uos.ac.kr	
		사무부총장	최윤소	스포츠학과	02-6490-2957	010-9741-0778	yoonsochoi@uos.ac.kr	
		■ 사무실 : 이메일 faculty@uos.ac.kr / 전화 02-6490-6802 / 팩스 02-6490-6804 / 담당자 이현주 ■ 주소 : (025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본부 6층 7615호 교수회						
26	인 천 대 학 교 교 수 회	회장	박정준	체육교육과	032-835-8571	010-5323-6837	sportpark@inu.ac.kr	2024.11.1 ~ 2026.10.31
		부회장	공석					
		정책국장	박민범	에너지화학공학과	032-835-8671	010-8607-3058	mbpark@inu.ac.kr	
		사무국장	이승용	체육교육과	032-835-8575	010-4471-4711	leesy@inu.ac.kr	
		■ 사무실 : 이메일 inufa@inu.ac.kr / 전화 032-835-8857 / 담당자 김가운, 김은정 ■ 주소 :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인천대학교 교수회관(2호관) 101호 교수회 사무실						
27	전 남 대 학 교 교 수 평 의 회 / 교 수 회	의장/회장	김민수	통계학과	062-530-3441	010-8601-2057	kimms@jnu.ac.kr	2025.9.1 ~ 2027.8.31
		(교수평의회)부회장	이찬영	경제학부	062-530-1557	010-5133-5470	chanyounglee@jnu.ac.kr	
		(교수회)수석부회장	한승훈	건축학부	062-530-1546	010-7221-0415	hshoon@jnu.ac.kr	
		(교수회)부회장	차성현	교육학과	062-530-2350	010-5032-4076	shcha@jnu.ac.kr	
		(여교수회)부회장	이옥란	응용식물학과	062-530-2054	010-3456-6644	mpizlee@jnu.ac.kr	
		기획이사	김연민	영어영문학과	062-530-3158	010-7151-0426	kogmk@jnu.ac.kr	
		홍보이사	황정하	생활복지학과	062-530-1328	010-4852-9179	jhwang@jnu.ac.kr	
		총무이사	신인식	수의학과	062-530-2635	010-8724-2996	dvmshin@jnu.ac.kr	
		사무처장	윤순도	화공생명공학과	061-659-7297	010-8601-3465	yunsd03@jnu.ac.kr	
		■ 사무실 : 이메일 jnuprof@inu.ac.kr/ 전화 062-530-5003 / 팩스 062-530-5004 / 사무국 062-530-5960 ■ 주소 :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3층 대학평의회/교수평의회/교수회						
28	전 북 대 학 교 교 수 회	회장	한상욱	과학교육학부	063-270-2775	010-9539-7775	shan@jbnu.ac.kr	2025.3.1 ~ 2027.2.28
		수석부회장	심관섭	동물생명공학과	063-270-2609	010-3889-1003	ksshim@jbnu.ac.kr	
		부회장	차세연	조류질병연구소	063-850-0689	010-8737-9835	seyeouncha@jbnu.ac.kr	
		사무처장	유명조	수의학과	063-850-0947	010-2680-5896	tick@jbnu.ac.kr	
■ 사무실 : 이메일 faculty@jbnu.ac.kr / 전화 063-270-2011 / 팩스 063-270-2012 / 담당자 이현서 ■ 주소 : (5489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진수당 364호								
29	전 주 교 육 대 학 교 교 수 협 의 회	회장	송지환	체육교육과	063-281-7176	010-8645-4326	ufosong114@jnu.ac.kr	2024.7.1 ~ 2026.6.30
		부회장	김성식	영어교육과	063-281-7194	010-9488-7355	sskim77@jnu.ac.kr	
		부회장	서현석	국어교육과	063-281-7050	010-6430-2266	hsseo@jnu.ac.kr	
		총무	김현태	과학교육과	063-281-7146	010-3916-6600	htkim@jnu.ac.kr	
■ 사무실 : 이메일 ufosong114@jnu.ac.kr / 전화 063-281-7174 / 팩스 063- 281-7237 / 담당자 송지환 ■ 주소 : (551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50 전주교육대학교 체육센터 송지환 교수 연구실								
30	제 주 대 학 교 교 수 회	회장	정수연	경제학과	064-754-3162	010-2944-8021	jsyecono2@jejunu.ac.kr	2025.3.1 ~ 2027.2.28
		수석부회장	전제웅	초등국어교육전공	064-754-4814	010-6374-1058	jje@jejunu.ac.kr	
		부회장/여교수협의회	김수연	법학과	064-754-2919	010-5252-4670	ksybaram@jejunu.ac.kr	
		부회장	강문중	국어국문학과	064-754-2716	010-2699-1137	kmoon@jejunu.ac.kr	
		사무처장	박병욱	행정학과	064-754-2936	010-9245-3820	piarri@jejunu.ac.kr	
		정책처장	조장희	경제학과	064-754-3163	010-2750-0303	Jh.cho04@jejunu.ac.kr	
		기획·연구위원장	임은정	초등음악교육전공	064-754-4865	010-4631-9036	ejlim@jejunu.ac.kr	
		교원·복지위원장	김우영	전자공학과	064-754-3668	010-9955-1033	semigumi@jejunu.ac.kr	
		학사·재정위원장	황은진	행정학과	064-754-2938	010-2585-9126	ejhwang@jejunu.ac.kr	
		소통·홍보위원장	이인엽	스포츠학과	064-754-3589	010-4746-9408	iylee@jejunu.ac.kr	
		제도개선위원장	신우봉	국어국문학과	064-754-2715	010-2691-9960	foratog@jejunu.ac.kr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유남	의학과	064-754-8145	010-8375-7400	nsunam@jejunu.ac.kr	
		■ 사무실 : 이메일 jejunuprof@jejunu.ac.kr / 전화 064-754-2088 / 팩스 064-754-2089 / 담당자 김현영 ■ 주소 :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교수회관 2층						

31	진 주 교 육 대 학 교 교 수 협 의 회	회장	한병래	컴퓨터교육과	055-740-1283	010-5551-3276	raehan@cue.ac.kr	2025.3.1 ~ 2027.2.28
		부회장	박찬영	도덕교육과	055-740-1202	010-2842-3944	chyp@cue.ac.kr	
		총무	이동민	사회과교육과	055-740-1221	010-4140-3849	ldmin1988@cue.ac.kr	
■ 사무실 : 이메일 ldmin1988@cue.ac.kr / 전화 055-740-1221 / 담당자 이동민 ■ 주소 : (52673)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369번길 3 진주교육대학교 제2강의동 3층 2308호 사회과교육과 이동민 교수 연구실								
32	청 주 교 육 대 학 교 교 수 협 의 회	회장	박윤경	사회과교육과	043-299-0735	010-5051-1153	realpykl@cje.ac.kr	2025.4.1 ~ 2027.3.31
		총무	장지은	과학교육과	043-299-0757	010-9119-1310	cjeb10@cje.ac.kr	
		재정	김미혜	국어교육과	043-299-0725	010-3245-9309	antikka@cje.ac.kr	
기록 송창근 수학교육과 043-299-0742 010-5877-3098 cgsong@cje.ac.kr								
■ 사무실 : 이메일 cjeb10@cje.ac.kr / 전화 043-299-0757 / 담당자 장지은 ■ 주소 : (2869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5 청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장지은 교수								
33	춘 천 교 육 대 학 교 교 수 협 의 회	의장	윤혜경	과학교육과	033-260-6468	010-2379-3216	yoonhk@cnu.ac.kr	2026.3.1 ~ 2028.2.29
		부의장	조은숙	국어교육과	033-260-6414	010-8102-8273	choes@cnu.ac.kr	
		부의장	최효식	교육학과	033-260-6435	010-2898-9263	s970218@cnu.ac.kr	
사무처장 이호옥 미술교육과 033-260-6498 010-5582-8095 lhw@cnu.ac.kr								
사무부처장 유미나 교육학과 033-260-6431 010-6295-9584 ymn@cnu.ac.kr								
■ 사무실 : 이메일 jmy@cnu.ac.kr / 전화 033-260-6124 / 팩스 033-264-3021 / 담당자 조민영 ■ 주소 : (2432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126 춘천교육대학교 석우관 2층 215호 교무처								
34	충 남 대 학 교 교 수 회	회장	정세은	경제학과	042-821-5580	010-8330-3348	jseeun@cnu.ac.kr	2025.3.1 ~ 2027.2.28
		부회장	주향연	수학과		010-6479-0515	hychu@cnu.ac.kr	
		부회장	홍장희	의학과	042-580-8256	010-2870-9050	boniii@cnu.ac.kr	
사무처장 김은정 사학과 042-821-5392 010-3806-1494 may4473@cnu.ac.kr								
운영위원 김은정 사학과 042-821-5392 010-3806-1494 may4473@cnu.ac.kr								
운영위원 황재훈 고고학과 042-821-6388 010-5638-1057 hwangjh@cnu.ac.kr								
운영위원 우미현 음악과 042-821-6923 010-4632-5674 woomihyun@cnu.ac.kr								
운영위원 박관근 정보통신융합학부 010-7214-2442 pangun.park@gmail.com								
운영위원 김정일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042-821-8580 010-7365-6072 jikimi@cnu.ac.kr								
운영위원 이승택 법학과 042-821-8514 010-3399-2040 leest@cnu.ac.kr								
■ 사무실 : 이메일 prof@cnu.ac.kr / 전화 042-821-5091 / 팩스 042-822-9637 / 담당자 이대은 ■ 주소 : (3413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본부별관(E7-1동) 5층 515호								
35	충 북 대 학 교 교 수 회	회장	최중국	의학과	043-261-2844	010-2984-2844	jkchoi@cbnu.ac.kr	2026.3.1 ~ 2028.2.29
		부회장	이형택	국제경영학과	043-261-3197	010-2030-5948	htlee@cbnu.ac.kr	
		사무처장	길영천	의학과	043-249-1784	010-2073-7139	gilyc@chungbuk.ac.kr	
기획이사 이비안 법학과 043-261-3378 010-2010-5847 vian4@cbnu.ac.kr								
정책이사 신정규 법학과 043-261-2629 010-5154-4249 shinjg@cbnu.ac.kr								
재정분과위원장 김형범 지구과학교육과 043-261-2737 010-5348-5407 hyoungbum21@cbnu.ac.kr								
법제분과위원장 장석천 법학과 043-261-3594 010-9566-9803 jangsc9800@cbnu.ac.kr								
교학분과위원장 유현정 소비자학과 043-261-2728 010-8821-1082 yoohj@cbnu.ac.kr								
■ 사무실 : 이메일 faculty@chungbuk.ac.kr / 전화 043-261-3087 / 팩스 043-276-8314 / 담당자 권숙희 ■ 주소 : (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대학본부(N10동) 7층 701호								
36	한 경 국 립 대 학 교 교 수 회	회장	이윤규	건축융합학부	031-670-5274	010-2762-5274	birdok@hknu.ac.kr	2025.10.28 ~ 2027.10.27
		부회장	김지숙	복지융합학부	031-610-4798	010-5524-9627	jskim505@hknu.ac.kr	
		부회장	문상영	법경영학부	031-670-5426	010-9973-7417	symoon@hknu.ac.kr	
부회장 이인호 전자전기공학부 031-670-5197 010-8979-5910 ihlee@hknu.ac.kr								
사무처장 김성룡 건축융합학부 031-670-5271 010-8835-1820 sr.kim@hknu.ac.kr								
사무처장 이희재 건축융합학부 031-670-5273 010-6893-2312 hee.lee@hknu.ac.kr								
■ 사무실 : 이메일 eprof@hknu.ac.kr / 전화 031-678-4782 / 담당자 장지윤 ■ 주소 : (17579)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국립대학교 교수회관								
37	한 국 교 원 대 학 교 교 수 협 의 회 /교수회평의회	회장	김도기	교육학과	043-230-3413	010-4708-0174	kogoldax@knue.ac.kr	2026. 3.1 ~ 2028. 2.29
		부회장	윤영주	수학교육과	043-230-3711	010-6217-6454	eyjung313@knue.ac.kr	
		사무총장	문재현	지구과학교육과	043-230-3659	010-4139-4129	tchoi@knue.ac.kr	
■ 사무실 : 이메일 faculty@knue.ac.kr / 전화 043-230-3018 (교수지원과) / 담당자 박진영 ■ 주소 : (2817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답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교수회관 교수회평의회								
38	한 국 방 송 통 신 대 학 교 전임교수협의회	회장	우정봉	무역학과	02-3668-4681	010-6725-3577	wkb@mail.knou.ac.kr	2026.4.1 ~ 2027.3.31
		부회장	하혜숙	청소년교육과	02-3668-4407	010-7299-1015	maumaum@mail.knou.ac.kr	
		사무총장	정성욱	경영학과	02-3668-4626	010-2593-9850	swjung11@mail.knou.ac.kr	
■ 사무실 : 이메일 knoufaculty@mail.knou.ac.kr/ 전화 02-3668-4626 / 팩스 02-3673-2384 / 담당자 정성욱(경영학과 교수) ■ 주소 : (03087)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8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혜관 403호								
39	한 국 체 육 대 학 교 교 수 평 의 회	의장	안성환	체육학	02-410-6835	010-8776-6754	answ007@knsu.ac.kr	2024.8. ~ 2026.8.
		수석부의장	한충식	체육학	02-410-6861	010-5245-0267	cshan@knsu.ac.kr	
		부의장	염동철	체육학	02-410-6844	010-2049-6522	mangjak@knsu.ac.kr	
이사 김태경 체육학 02-410-6955 010-6440-0371 spt21@knsu.ac.kr								
■ 사무실 : 이메일 answ007@knsu.ac.kr / 전화 02-410-6835 ■ 주소 : (0554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실내수영장 3층 305호								
-	서 울 교 육 대 학 교 교 수 협 의 회 (공석)	회장						
		부회장						
		■사무실 : ■ 주소 : (0663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서울교육대학교						

4 제4차 회장단 회의, 만찬 및 숙박 장소 안내

□ 회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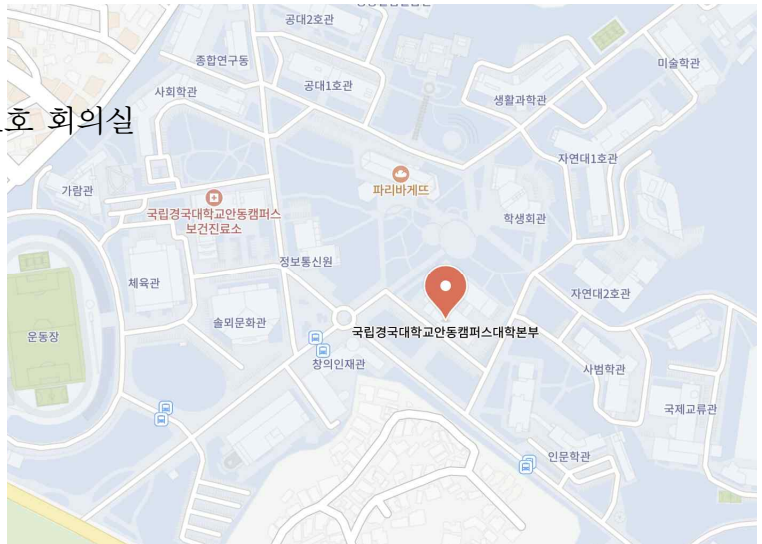
- 국립경국대학교 대학별관 4층 401호 회의실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1375

□ 만찬 장소

- 청록한정식
- 경북 안동시 운동장길 197

□ 숙박 장소

- 안동그랜드호텔 및 리첼호텔
- 경북 안동시 관광단지 346-84, 346-69
- 전화 054-850-9770
- 숙박비 결제
- 회원교 회장 : 국교련에서 결제
- 동반 참석자 : 회원교에서 개별 결제



금토 이동은 모두 버스 이용

